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150001-10



20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20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Annual report 2014

연례보고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www.debates.go.kr
열린 토론 바른 선택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150001-10



20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Annual report 2014

연례보고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Contents

I | 일반현황 01

- 1. 설치목적 02
-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02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03
-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05

II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주년 기념사업 09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10
- 2. C와 슬로건, 미래비전 공표 11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발간 13
- 4. 유권자 토론회 개최 14

III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15

- 1.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16
- 2.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19
- 3.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22
- 4. 후보자TV토론회 개최 27

IV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평가 33

- 1. 후보자TV토론회 국민평가단 운영 34
-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의 개최 39
- 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40
-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연구 42

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43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우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상	43

V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45

1.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46
2. 위원 워크숍 개최	51

VI 정책토론회 관리 53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54
2.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64

VII 민주시민토론문화의 육성 73

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74
2.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85
3.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개최	89
4.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단체 등의 토론 지원	91

VIII 부록 93

1. 20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94
2. 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96
3. 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101
4.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121
5.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123
6. 역대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	125

Contents

표·목·차

[표 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명단	3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4
[표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현황	5
[표 1-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6
[표 2-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10주년 기념행사 포상 수상자(기관) 현황	11
[표 2-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의 의미	12
[표 3-1] 선거방송토론사무편람 개정 내용	18
[표 3-2] 선거방송토론 실무과정 교육·연수 내역	19
[표 3-3] 홈페이지 방문자수 현황	22
[표 3-4]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최현황	22
[표 3-5]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내용	23
[표 3-6] 선거별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 상위권 현황	25
[표 3-7] 모바일앱 다운로드 및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	26
[표 3-8] 모바일앱 조회수 상위권 현황	26
[표 3-9] 모바일앱 이용자 평가 점수	27
[표 3-10] 후보자TV토론회 개최횟수	28
[표 3-11] 방송일자별 개최현황	28
[표 3-12] 선거별 후보자 불참 현황	29
[표 3-13] 중계방송 형태별 중계방송 현황	29
[표 3-14] 사회자 선정 현황	30
[표 3-15] 주제 선정 현황	30
[표 3-16] 국민질문공모 분야별 현황	30
[표 3-17] 토론회 진행방식 활용내역	31
[표 3-18] 수화통역·자막방송 실시현황	32
[표 4-1] 국민평가단 성별·연령별 현황	34
[표 4-2] 국민평가단 직업별 현황	35
[표 4-3] 국민평가단 운영장소와 시기별 현황	35
[표 4-4] 후보자선택에 있어서의 TV토론의 영향력	36
[표 4-5] 후보자선택시 영향을 미친 선거운동방법	37
[표 4-6] TV토론이 재미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37
[표 4-7] 후보자TV토론이 재미없는 이유	38

[표 4-8] TV토론회 불참시 제재수단	38
[표 4-9]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선거 평가회의 주요내용	39
[표 4-10]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현황	41
[표 5-1]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현황	46
[표 5-2] 중계방송형태별 중계방송 현황	47
[표 5-3] 중계방송사 유형별 개최 현황	47
[표 5-4] 방송일자별 개최 현황	48
[표 5-5] 방송시간대 개최 현황	48
[표 5-6]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49
[표 6-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54
[표 6-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초청정당 및 토론자 현황	56
[표 6-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현황	56
[표 6-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57
[표 6-5]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자 선정 현황	57
[표 6-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선정 현황	58
[표 6-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59
[표 6-8]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63
[표 6-9]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64
[표 6-10]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65
[표 6-11]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65
[표 6-12]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66
[표 6-1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66
[표 6-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67
[표 6-15]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68
[표 6-16] 2014년도 정당정책토론회 방송사별 시청률 현황	71
[표 7-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75
[표 7-2]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현황	76
[표 7-3]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접수현황	77
[표 7-4]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 진행방식	78
[표 7-5]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진행방법	80
[표 7-6]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83
[표 7-7] 2014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현황	85
[표 7-8]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87
[표 7-9]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89
[표 7-10]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내용	90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 창설 10주년 기념식 장면	10
[그림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와 슬로건, 미래비전 공표 장면	11
[그림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12
[그림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표지	13
[그림 5] 유권자토론회 개최 장면	14
[그림 6] 유권자토론회에서의 청중 질문 장면	14
[그림 7]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 장면	16
[그림 8]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기념사진	17
[그림 9] 후보자·유권자용 영상물 표지	21
[그림 10] 홈페이지 초기화면	21
[그림 11]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최 장면	23
[그림 12] TV토론 실습과 체험 장면	24
[그림 13]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표지	24
[그림 14] 다시보기 서비스 화면	26
[그림 15] 후보자 대담·토론회(5. 27. 부산광역시 교육감선거) 개최 장면	27
[그림 16] 국민평가단의 TV토론회 시청 장면	34
[그림 17]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선거 평가회의 장면	39
[그림 1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장면	41
[그림 19]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토론자 발표 장면	41
[그림 20]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표지	43
[그림 21] 위원 워크숍 개최 장면	51
[그림 2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설비	60
[그림 23] 청중석 설비	60
[그림 24] 수화통역 설비	60
[그림 25]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장면	61
[그림 26]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장면	61
[그림 27]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장면	62
[그림 28]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청중과 소통의 시간)	70
[그림 2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	70
[그림 30]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회대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장면	74
[그림 3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회대회 장소 설비 등	76

[그림 32]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예비팀 추첨 장면	79
[그림 33]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심사 장면	79
[그림 34]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심사위원 교육 장면	79
[그림 35]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내·외빈 참관 장면	81
[그림 36]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오산시 중·고생 참관 장면	81
[그림 37]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오산시 중·고생 기념사진 촬영	82
[그림 38]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기념사진 촬영	82
[그림 39]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식 장면	82
[그림 40]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 대회 (준)결승전 장면	84
[그림 4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 대회 결승전 장면	84
[그림 42]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 대회 우승팀 기념사진 촬영	84
[그림 43]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진행	86
[그림 44]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기념촬영	87
[그림 45]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장면	88
[그림 46]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기념촬영	88
[그림 47]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개최 장면	90
[그림 48]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실습 장면	91
[그림 49]	찬성팀 멘토링 장면	92
[그림 50]	반대팀 멘토링 장면	92
[그림 51]	토론체험 실습 장면	92
[그림 5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판넬 전시 장면	92

Chapter I

일반현황

- 1. 설치목적
-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일반현황

〔1〕 설치목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¹⁾(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의 소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1)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11인(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3) 위원장 선출 등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있다.

표 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명단

(2014. 12. 31. 현재, 위촉일순)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기관
위원장	이 정 희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 성 룡	공 무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김 찬 태	방 송 인	K B S
	임 현 진	교 수	시민단체
	성 한 용	언 론 인	새정치민주연합
	허 익 범	변 호 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상 철	교 수	새누리당
	오 미 영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 기 원	방 송 인	M B C
	양 정 숙	변 호 사	법 조 계
	박 유 성	교 수	학 계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1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각각 창설되었다.

2008년 3월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정(2008. 3. 21.)으로 천안시에 자치구가 아닌 천안시서북구와 천안시동남구가 설치되어 천안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폐지되고 천안시서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천안시동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내에 여러 개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 지방선거 때에는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었다. 이에 2008년 4월에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선

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67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앙과 16개 시·도를 포함하여 모두 266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단위 : 개)

일 자	근 거	현 황			
		계	중앙	시·도	구·시·군
2004. 3. 1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법률안에 따라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	—	—
2004. 3. 15.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	1	—	—
2004. 3. 29. 까지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 및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181) 창설	198	1	16	181
2008. 3. 21.	• 천안시 분구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 증설(↑2) : 천안시서북구·천안시동남구위원회 ※ 폐지(↓1) : 천안시위원회	199	1	16	182
2008. 5. 30.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 ※ 증설(↑67) : 국회의원선거구위원회가 아닌 구·시·군위원회 단위 설치	266	1	16	249
2010. 7. 1.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49개 → 251개) ※ 증설(↑5) :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위원회 ※ 폐지(↓3) : 창원시·마산시·진해시위원회	268	1	16	251
2012. 7. 1.	•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폐지	268	1	17	250
2014. 7. 1.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50개 → 251개) ※ 증설(↑4) :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 흥덕구·청주시청원구위원회 ※ 폐지(↓3) :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청원군 위원회	269	1	17	251

2010년 7월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고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창원시에 5개 구가 신설되어 창원시·마산시·진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고, 창원시의창구·창원시성산구·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창원시진해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249개였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51개로 늘어났다.

2012년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에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개가 늘어 17개가 되었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개 축소된 250개가 되었다.

2014년 7월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설치되어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청원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폐지되고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에 1개, 시·도에 17개, 구·시·군에 251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표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현황

(2014. 12. 31 현재)

구분	위원회수	지역별																
계	269																	
중앙	1																	
시·도	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251	25	16	8	10	5	5	5	－	44	18	14	16	15	22	24	22	2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리 사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정한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능력과 자질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주관	종류	선거별	개최시기	횟수	근거법률
중앙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2회 이상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임기만료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 정책토론회	-	연중 (단,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제39조
시·도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구·시·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2)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라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주요 정당을 초청하여 정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정당이 자당의 정강·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당정책토론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3)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토론대회, 토론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의 선거·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토론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들의 교육·연수를 통해 보다 나은 토론회 운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활성화와 토론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유관 학회, 기관·단체들과 교류·협력,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후원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토론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Chapter II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주년 기념사업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창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 2. CI와 슬로건, 미래비전 공표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발간
- 4. 유권자 토론회 개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주년 기념사업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2014. 3. 14.(금)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유권자와 함께하는 위원회로의 위상을 정립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선진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창설 10주년 기념식 장면

MBC 김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창설 10주년 경과보고, 이정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의 기념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양희부 한국케이블TV협회장,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축사에 이어 창설 10주년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현직 위원장·상임위원·위원·사무국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간사,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 방송·언론사 간부,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소통학회 등 학회·유관기관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을 축하하였다. 특히, 이정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선거방송토론이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요한 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우리 사회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편,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하였다. 포상은 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 표창으로 구분하여 수여하였으며 수상자(기관)는 다음과 같다.

표 2-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10주년 기념행사 포상 수상자(기관) 현황

시상내역		수상자(기관)		비고
시상명	시상자	소속	성명	
공로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SBS	현 경 보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이 호 은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송 경 석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이 승 희	
공로상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위원장	동명대학교	정 성 호	
		MBC	박 세 미	
		부산 동구위원회	김 도 훈	
		오산시청	어 수 자	
		국회사무처 관리과	이 기 호	
특별공로상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 은 철	
기관(단체)감사패		KBS, MBC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2〕 CI와 슬로건, 미래비전 공표



그림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와 슬로건, 미래비전 공표 장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창설 10주년 기념식을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을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CI와 슬로건, 미래비전을 공표하였다.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미래비전은 과거 10년간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선거문화, 토론문화, 방송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CI, 슬로건, 비전 및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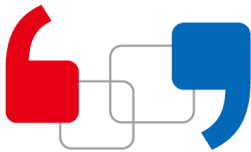
그동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으로써 출범 이후 독자적인 CI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TV토론이라는 업무특성상 방송화면에 적합한 CI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4개월여 기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를 제작하였다.



그림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는 심벌마크와 함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글씨체를 계승하였다.

표 2-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의 의미



중간의 토론테이블(사각형) 양쪽으로 말하기를 상징하는 따옴표를 배치하여 토론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논의하는 것을 상징화하였다. 또한, 마주보는 따옴표로 토론자간 정책 경쟁구도를 표현하였다.



CI의 색상으로, 상호간 조합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는 빛과 색의 3원색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정견·정책 등 사회의 모든 문제를 토론을 통하여 다룰 수 있음을 표현하고, 색상배열을 무지개 순서(좌측으로부터 빨강, 노랑, 초록, 파랑)로 하여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토론문화 정착이라는 염원을 담았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색상을 계승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독립기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표현하였다.



사각의 형태는 TV, 스마트폰 화면 등 다양한 방송 미디어 매체를 상징하며 동시에 토론테이블, 토론의 장을 상징한다.



각 개체들이 겹쳐지는 공간은 다양한 주의·주장 등이 토론을 통하여 모아진 공통분모를 상징한다. 즉, 토론과정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토론은 단순 경쟁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 사회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슬로건

슬로건 “열린 토론, 바른 선택”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열린 토론문화를 지향하고, 이를 통하여 공직후보자의 합리적인 비교·판단, 소통과 화합, 사회갈등관리 등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열린 토론”은 누구나 어떤 문제나 토론의제로 받아들이고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은 열린 토론을 통해 유권자가 훌륭한 대표자를 뽑고 사회문제를 바르게 해결 하자는 의미이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미래 비전과 실천과제

“열린 토론, 바른 선택”이란 슬로건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국민 참여를 위한 토론문화 선도,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으로서 이를 위한 실현과제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국민에 봉사하는 후보자 TV토론회 관리, 효율적인 정책토론회 관리로 국민과 정당 간 소통에 기여하고 정책선거 실현, 열린 토론을 통한 갈등 해소 등 사회통합에 기여, 선진 민주시민에 걸맞은 바른 토론문화 육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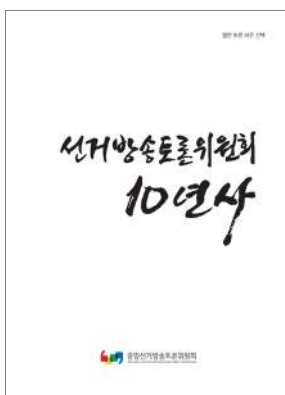


그림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표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과거 10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과 비전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창설배경을 포함하여 출범부터 현재까지 선거방송토론 제도와 활동의 변천사와 후보자TV 토론회 등의 관리상황 등을 기술하였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담고 있다.

제1장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출범과 정착, 제2장에서는 지난 10년간 후보자TV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정책토론회 관리상황, 제3장에서는 미래비전과 향후 과제를 기술하였고, 부록에는 선거방송토론 연혁 등을 수록하였다.

【4】 유권자 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2014. 3. 14.(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유권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오미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 민주당(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김현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현근택 이사와 전국대학생토론회 수상자인 차오름씨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선거방송토론 10년, 성찰과 미래!”를 주제로 경북대 이강형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여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발제자·토론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10년의 성찰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면서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유권자간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토론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토론자들은 후보자TV토론회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써 토론불참자·기피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토론회의 프라임시간대 편성을 위한 방송사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기타 후보자TV토론회와 관련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또한, TV토론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필요가 있고, 역동적인 TV토론을 이끌어 내는 사회자의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림 5 유권자토론회 개최 장면



그림 6 유권자토론회에서의 청중 질문 장면

Chapter III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 1.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 2.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 3.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 4. 후보자TV토론회 개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1〕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1)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 3. 14. (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은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정견·정책선거를 실현하는 핵심기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림 7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 장면

사전 준비 및 점검과 공정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공영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 이행 방안”,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른 사전투표 실시 전 토론회 개최 필요성”, “시청률 제고를 위한 방송시간대 협의 강화” 등 주요 핵심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전투표일 이전에 후보자TV토론회를 집중 개최하고,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TV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이 용이한 방송시간대를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사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방안 등이었다. 또한,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지역현안 등 지방선거에 맞는 토론의제를 공모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유권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토론회 진행방식 도입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

특히 유권자들이 토론회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후보자간에 서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주도권토론”, “상호토론”의 적극 활용과 유권자 참여를 위한 “국민질문 공모”, 중앙선



그림 8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기념사진

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등의 활성화, 지역민방의 중계방송 참여 기회 보장 등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담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영방송사의 프라임시간대 토론회 개최 의무를 명문화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

련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인 해결 방안에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가 과거 TV토론회와는 차별화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또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과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할 필요성 등 기타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도 추가로 논의되었다.

2) 사무편람 정비 및 배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을 개정하였다. 각종 선거의 후보자TV토론 관련 질의 선례와 예산집행 기준, 업무 간소화 방안 등을 반영하고 설명내용을 알기 쉽도록 보강하였다.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은 2013년 12월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2014년 2월 개정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사무편람을 배부하였다(주요 개정내용은 「20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P.28 참조).

2014년 8월 7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2호, 제3호, 제5호 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개정(2014. 7. 29.공포, 중앙선거관리규칙 제415호)함에 따라, 사무편람에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가 개정하였다.

표 3-1. 선거방송토론사무편람 개정 내용

개정일	특징	주요 내용
2014. 3.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 자토론회 관리규정」 반영	- 관련내용의 법적 근거(법·규칙·관리규정) 명시 - 통일적 적용 예규적 사항 적시 - 위원회의 비공개시 절차 등 명시 - 자문기피·정당가입 등 전문(자문)위원 해촉사항 명시 - 토론회 동영상 제공 요청시 처리 등 공개관련 사무처리 과정 명시 - 불참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보완
2014.7.29.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개정 - 위원추천서·위원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비롯한 각종 서식에 공통 적용

3) 공영방송사와의 업무 협조체제 강화

가. 공영방송사 대표 방문·면담

2014. 4. 4.(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은 KBS·MBC를 방문하여 방송사 대표자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TV토론 시청률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사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하였고, 공영방송사의 동시중계와 좋은 시간대 편성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공영방송사와의 업무협의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 대표 방문·면담의 후속조치로 2014. 4. 10.(수) 공영방송사(KBS, MBC) 관계자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앙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간사까지 참석하여 실무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협의 결과 서울·인천·경기 광역단체장 후보자토론회를 최초로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가 동시중계에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4) 후보자TV토론회 관련 물의사례 및 대처방안 마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역대 후보자TV토론회에서 발생한 이의제기, 사건·사고 사례

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처리결과 및 예방대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시달함과 동시에 e-선거마당 <선거방송토론방>에 게시함으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를 주관하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종 질의 및 사건 등에 대하여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1)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 대상 직무교육 실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 4. 1(화) ~ 4. 10(목) 선거연수원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 등 6급 이하 공무원 269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선거방송토론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2. 선거방송토론 실무과정 교육·연수 내역

구분	기간	인원수	교육내용
1회	2014. 4. 1(화) ~ 4. 2(수)	69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방침
2회	2014. 4. 3(목) ~ 4. 4(금)	72	• 선거방송토론 실무
3회	2014. 4. 7(월) ~ 4. 8(화)	63	• 선거방송토론 사례 분석
4회	2014. 4. 9(수) ~ 4. 10(목)	61	• 효과적인 토론회 진행방식 • 토론방송의 이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 토론 업무 담당자 상당수가 토론회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토론회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의 방향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 관리절차 이해와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 내용은 ‘선거방송토론 실무’, 동영상으로 보는 토론사례와 예상 물의 사례 등을 포함한 ‘선거방송토론 사례 분석’, ‘효과적인 토론회 진행방식’과 전문 방송인이 진행하는 방송토론 현장경험을 전달하는 토론방식의 이해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2) 후보자TV토론회 관리상황반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일(5.15)부터 선거일전일(6.3)까지 중앙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 후보자토론회 관리상황을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의 일환으로 관리상황반을 편성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과 시·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 긴밀한 업무협약이 이루어 질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중앙관리상황반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상황과 문제점을 시·도상황관리반과 공조하여 중점 점검·지원하였다. 중앙관리상황반에서는 관계규정 및 사무편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인 및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질의에 회답하고, 법규 운용 및 언론대응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발생 시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했다.

3) 「후보자TV토론 주간」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TV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투표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인 5월 22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9일까지를 『후보자TV토론 주간』으로 지정·운영하였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총 353회의 선거방송토론회 중 이 기간에 339회(99%)의 대담·토론회, 합동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를 완료하였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주간에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TV토론 방송 시청을 적극 유도하였다.

4) 후보자TV토론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에게는 후보자TV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후보자에게는 후보자TV토론회의 중요성을 주지하여 토론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자 홍보영상 DVD를 제작하였다.

후보자용과 유권자용으로 구분·제작(유권자용 1편, 7분 30초, 후보자용 1편, 15분 30초)한 영상물은 객관적 통계자료, 유권자 인터뷰,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함으로써 영상물의 신뢰도와 완성도 및 흥미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유권자용 영상물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여객터미널 대합실, 시내버스 등에서 상영하도록 하는 등 홍보에 널리 활용하였다. 아울러, 후보자용 영상물은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들에게 배부

하여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준비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후보자들로부터 매우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요 정당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을 직접 방문하여 영상물의 제작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용 홍보동영상을 케이블TV 2개사(CMB광주, KCTV광주)를 통해 7일간 56회 방영하였으며, 충청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내 전광판(200인치 Full HD)을 통해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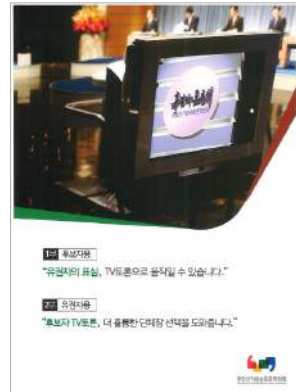


그림 9 후보자·유권자용 영상물 표지

5) 홈페이지 개편



그림 10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 4. 10. 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개편 목적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토론회와 후보자TV토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홈페이지의 서버용량을 확충하였고 “국민참여마당”을 신설하여 각종 국민제안 및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구성하

였다. 또한,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디자인을 개편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를 높였으며,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페이지와 연동될 수 있도록 배너를 구성하였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홈페이지 개편 이후(2014.4.10. ~ 6.30.) 총 34,832명으로 집계되었다. 개편 이전(2013.1.1. ~ 2014.4.9.) 총 방문자 수인 31,201명과 제5회 지방선거시(2010.1.1. ~ 2010.6.2.) 총 방문자 수인 25,862명 보다 9천명을 초과하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2014년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14. 12. 31. 현재 74,428명으로 2013년 18,328명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 방문자수 현황은 [표3-3]과 같다.

표 3-3. 홈페이지 방문자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비고
방문자수	73,498	18,328	62,674	67,776	66,541	

[3]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1)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게 체험을 통해 TV토론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를 총 4회 운영하였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는 전국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으로부터 관심을 끌어 총 158명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로부터 유익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표 3-4.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최현황

구분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가현황		
			신청인원	참가인원	참여율
			243명	158명	65.0%
수도권	2014.2.15.(토)	서울MBC아카데미	83명	41명	49.4%
충청권	2014.2.17.(월)	대전MBC스튜디오	56명	41명	73.2%
호남권	2014.2.19.(수)	광주MBC스튜디오	50명	50명	100%
영남권	2014.2.25.(화)	경남MBC창원스튜디오	54명	26명	48.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 분야 중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 전문기관인 MBC아카데미와 협의하여 연수내용에 충실을 기하였다.



그림 11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최 장면

특히, MBC아카데미 아나운서 과정을 지도하는 교수를 강사로 섭외하여 카메라 적응 훈련 및 TV 토론 체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스피치를 교정해주고 다양한 토론 진행방식을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들에게 선거방송토론의 제작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등 TV토론 실무 능력을 키우는 한편, 후보자 TV토론회를 주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소수 정예(1개반 평균 15명)로 반을 편성(2~3개반)하여 실습과 이론 교육을 통한 다양한 토론방식을 경험하게 하였고, 각 반별로 방송인 출신 전문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 토론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토론과 접목시켜 설명·강평함으로써 토론방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였다.

표 3-5.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내용

일시	강좌명	교육내용	강사진
09:30~10:00	입 교	• 입교식 • 과정 안내	
10:00~10:50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의 절차 및 방법 • 모의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배부·안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내부강사
11:00~12:00	카메라의 이해	• 카메라의 이해 및 이미지컨설팅	아나운서 과정교수
12:00~13:30	점심시간	• 점심식사	
13:30~17:40	카메라 적응훈련 및 TV토론 실습·체험	• 스피치의 기본 및 파워스피치 방법 훈련 • 카메라 적응 훈련 및 스튜디오 TV토론 체험 (방송스튜디오 녹화실습, 실전테스트) ※ 2~3개 반으로 구분하여 실습 위주 교육 실시	아나운서 과정교수
17:40~18:00	강 평	과정 강평	아나운서 과정교수

참가자 본인들의 실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제공하여 교육 후에도 자신의 장·단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수가 1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강좌 참석자 중 15명(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13명)이 당선됨으로써 강좌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4개 단위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음에도 불참자(신청자 243명, 참가자 158명, 참석율 65%)가 많았으므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번 강좌에 대한 교육과정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입후보예정자수 대비 참가 가능 인원이 적어 강좌의 횟수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12 TV토론 실습과 체험 장면

2)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발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 3월, 관리규정·편람 등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북에는 후보자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토론회 참여 시 자신감을 갖는 방법과 카메라 시선처리, 복장, 제스처 등 선거방송토론에 꼭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한편, 김홍연 MBC아카데미 부장, 김용필 한국경제TV 앵커의 감수를 받아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약 3,000부를 전국의 (예비)후보자 등에게 배부하였다.



그림 13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표지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정비·활용 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 서버를 증설하고, 모바일용 홈페이지(m.debates.go.kr)를 새로이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에는 국민제안코너, 후보자TV토론회 국민평가 코너 등을 개설·운영하여 국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룹웨어 내에 있는 선거방송

토론 게시판을 공지사항, 묻고답하기, 의제·진행방식, 기타 자료실로 새롭게 정비하여 후보자TV토론회 관리상황,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대본 및 큐시트, 토론의제 관련 자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지를 여론조사 수집자료 등을 실시간 게시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한 업무협조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4) 후보자TV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정책선거에 기여하고, 선거 이슈와 후보자간의 쟁점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TV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비례대표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토론회 등의 동영상을 유권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보급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다시보기 웹 페이지(www.tvdebates.co.kr)를 운영하였으며, 모바일과 온라인 서비스의 통합으로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유권자들이 쉽게 토론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연계하여 다시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네이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제주지역의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TV토론회와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제주지역의 시·도교육감 선거 후보자TV토론회 총 19개의 KBS 방송분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네이버는 MBC 단독 중계방송분 총 5개(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후보자TV토론회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와 직접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표 3-6. 선거별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 상위권 현황

(단위 : 회)

구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비례대표시·도의원	구·시·군의장
1순위	서울 초청 토론(6,154)	서울 초청 토론(1,085)	제주 초청 토론(439)	울산 울주 초청토론(570)
2순위	부산 초청 토론(2,482)	대전 초청 토론(489)	대전 초청 토론(371)	충북 증평 합동 토론(340)
3순위	대구 합동 토론(1,999)	경기 초청 토론(333)	서울 초청 토론(227)	충남 당진 초청 토론(30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를 이용한 조회수는 49,307회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가 높은 토론회의 순위는 [표3-6]과 같다.



그림 14 다시보기 서비스 화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후보자TV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모바일 마켓(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 아이폰 : APP스토어)을 통해 보급하였으며, 5,297회의 다운로드 수와 23,107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표 3-7. 모바일앱 다운로드 및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

구분	선거구수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		
		합계	안드로이드	아이폰	소계	안드로이드	아이폰
제6회 지선	277	5,297	4,208	1,089	23,107	18,530	4,577
제19대 국선	246	2,705	2,705	-	13,951	13,951	-

표 3-8. 모바일앱 조회수 상위권 현황

(단위 : 회)

구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비례대표시·도의원	구·시·군의장
1순위	서울 초청 토론 (2,751)	서울 초청 토론 (931)	서울 초청 토론 (255)	경북 청도 합동 연설 (465)
2순위	인천 초청 토론 (644)	경기 초청 토론 (425)	경기 초청 토론 (244)	경기 연천 초청 토론 (371)
3순위	경기 초청 토론 (415)	대구 초청 토론 (186)	대전 초청 토론 (163)	울산 동구 초청 토론 (263)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유권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점수 또한 제19대 국선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3-9. 모바일앱 이용자 평가 점수

구 분	총 참가인원	평균 평점	안드로이드		아이폰		비고
			참가 인원	평점	참가 인원	평점	
제6회 지선	122	4.87	102	4.8	20	4.95	평점은 모바일 마켓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앱)별로 유권자 평가를 종합·평균하여 산정하며,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평가임.
제19대 국선	66	4.7	66	4.7	-	-	
대 비	+56 (84.8%)	0.17 (+3.6%)	+36 (54.5%)	0.1 (2.1%)	-	-	

위원회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동영상은 선거종료 후 선거정보도서관으로 이관하였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마켓에서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되, 동영상 보기는 선거정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후보자TV토론회 개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총 353회의 대담·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실시라는 변화된 선거환경에 대응하여 대담·토론회와 합동방송연설회 중 99%인 349회를 사전투표 기간 전에 개최(중계방송)완료하였다.



그림 15 후보자 대담·토론회(5. 27. 부산광역시 교육감선거) 개최 장면

표 3-10. 후보자TV토론회 개최횟수

(단위: 회)

구분	계	토론				대담			연설회				비고
		소개	초청	초청 요건 미충족 ²⁾	합동	소개	초청	초청 요건 미충족	소개	초청	초청 요건 미충족	합동	
계	353	245	208	8	29	13	5	8	95	3	63	29	
시·도지사	21	19	16	1	2	2	-	2	-	-	-	-	
시·도 교육감	18	18	17	1	-	-	-	-	-	-	-	-	
비례대표	29	23	17	6	-	6	-	6	-	-	-	-	
구·시·군의 장	285	185	158	-	27	5	5	-	95	3	63	29	

※ 기초단체장 무투표선거구(토론회 등 개최대상 아님) 4곳 : 대구남구·달성군, 경북고령군·봉화군

표 3-11. 방송일자별 개최현황

(단위: 회)

구분	계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교육감	구·시·군의 장
계	353(100%)	21	29	18	285
5월 22일(목)	23(7%)		11		12
5월 23일(금)	32(9%)	1	7	2	22
5월 24일(토)	14(4%)	1	2	1	10
5월 25일(일)	14(4%)		2	1	11
5월 26일(월)	50(14%)	3	-	3	44
5월 27일(화)	67(19%)	7	3	4	53
5월 28일(수)	82(23%)	1	1	2	78
5월 29일(목)	67(19%)	8	3	5	51
5월 30일(금)	4(1%)				4

대담·토론회 등에 불참한 후보자는 총 17명(대담·토론회 13명, 연설회 4명)이었으며,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자³⁾ 총 794명 중 13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하여 과태료 400만원⁴⁾을 부과하였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참후보자 총19명(대담·토론회 12명, 연설회 7명, 과태료부과자 10명)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초청요건 미충족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라 대담·토론회의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

3)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자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라 대담·토론회의 참석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

4) 제82조의2제4항 각호에 따라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표 3-12. 선거별 후보자 불참 현황

(단위:명)

구분	후보자수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소개	참석	불참	과태료 부과	소개	참석	불참
계	947	745	732	13	13	202	198	4
시·도지사	61	61	60	1	1			-
시·도교육감	72	69	68	1	1	3	3	-
비례대표시·도의원	87	66	66	-		21	20	1
구·시·군의 장	727	549	538	11	11	178	175	3

한편, 공영방송사 대표 방문·면담과 실무자 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영방송사의 동시중계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좋은 시간대 편성을 위해 적극 협의함으로써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동시중계 건수가 증가되었다.

표 3-13. 중계방송 형태별 중계방송 현황

(단위:회)

구분	개최횟수 (방송횟수)	최초 중계방송								재방송			
		주관방송사 단독중계방송				2개이상 방송사 동시중계방송							
		소개	토론	대담	연설	소개	토론	대담	연설	소개	토론	대담	연설
계	353 (434)	292	195	10	87	61	50	3	8	81	53	5	23
시·도지사	21 (23)	7	5	2	0	14	14	0	0	2	1	1	0
시·도교육감	18 (18)	11	11	0	0	7	7	0	0	0	0	0	0
비례대표	29 (35)	26	20	6	0	3	3	0	0	6	4	2	0
구·시·군의장	285 (358)	248	159	2	87	37	26	3	8	73	48	2	23

※ 시차방송(20분 이내 시차를 두고 방송)의 경우 동시중계방송에 포함.

※ 3개 이상 방송사 동시방송 시는 2개 이상 방송사 동시중계방송에 포함.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등 동시중계 내역(총 26회)

■ 시·도지사(4) : 인천, 부산, 강원, 제주 ■ 시·도교육감(3) : 부산, 강원, 제주

■ 비례대표시·도의원(4) : 강원(2), 제주(2) ■ 구·시·군의장(15) : 강원(15)

후보자TV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을 보면, 353회의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에 353명의 사회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방송·언론계 종사자들이 많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TV토론 등 방송진행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표 3-14. 사회자 선정 현황

(단위:명, %)

구분	계	학계	방송·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위 원
선정인원 (비율)	353 (100)	185 (52.5)	165 (46.8)	1 (0.2)	2 (0.5)	-

토론회의 주제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여론조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정책추진협의체의 정책아젠다, 각 정당의 정책, (예비)후보자 선거공약, 지역신문·방송사의 보도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 3. ~ 5. 16. 까지 실시한 지역별 국민질문공모를 통하여 수집된 의제를 활용하였다.

표 3-15. 주제 선정 현황

(단위:개, %)

구분	계	사회 현안															후보자 공약	개인 신상
		정치	선거	지방 자치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환경	기타			
주제수	1,341	47	1	160	1	242	46	133	161	98	2	90	18	56	41	208	37	
비율	100.0	3.5	0.1	11.9	0.1	18.0	3.4	9.9	12.0	7.3	0.1	6.7	1.3	4.2	3.1	15.5	2.8	

표 3-16. 국민질문공모 분야별 현황

(단위:건, %)

구분	지역현안				기타	계
	지방자치	경제	사회	교육		
질문건수 (비율)	168 (22.5)	323 (43.2)	66 (8.8)	100 (13.4)	91 (12.2)	748

토론회 진행방식은 후보자수, 토론시간, 질문과 답변 방식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였다. 기조연설과 맺음말은 거의 대부분의 토론회에서 사용하였으며 사회자 공통질문은 토론회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총 257회 사용되었고, 특히 이번선거에서는 주도권토론방식이 많이 채택되었다. 토론회 진행방식 활용내역은 [표3-17]과 같다.

표 3-17. 토론회 진행방식 활용내역

(단위: 회)

구분	계	진행방식 유형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개별질문	사회자 공통질문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모두발언후 보충질문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후보자 개별질문후 보충질문	기타
횟수	818	257	77	80	131	155	15	72	31

※ 주도권토론 : 한 후보자가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자들과 자유롭게 상호토론(질문, 답변)을 하는 방식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새로운 토론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의 승낙하에 사용할 수 있는 ‘찬스발언’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고,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된 유권자 질문을 후보자 수만큼 준비해 놓고 사회자가 임의로 선택권을 주면서 즉석에서 선택하여 답변하는 방식 등 참신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TV토론 시청편의를 위해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최된 모든 대담·토론회와 합동방송연설회에서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수화통역과 자막방송 실시현황은 [표3-18]과 같다.

표 3-18. 수화통역·자막방송 실시현황

(단위: 회)

시·도명	후보자토론회 등 수화·자막방송 실시현황								비고
	시·도(시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구·시·군				
	소계	수화 통역	자막 방송	수화·자막 동시	소계	수화 통역	자막 방송	수화·자막 동시	
서울	3			3	25	25			
부산	3	1 (비례대표)		2 (시장, 교육감)	16	16			
대구	3	3			6	6			남구, 달성군
인천	3			3	10	10			
광주	3			3	5			5	
대전	3	3			5	5			
울산	3	3			5	5			
세종	3	3			0				
경기	3			3	31	31			
강원	3	3			18	18			
충북	3	3			11	11			
충남	3	3			15	15			
전북	3	3			14	14			
전남	3	3			22	22			
경북	3	3			21	21			고령, 봉화
경남	3	3			18	18			
제주	6	6			0				
계	54	40		14	222	217		5	4개 무투표당선

Chapter IV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평가

- 1. 후보자TV토론회 국민평가단 운영
-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의 개최
- 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연구
- 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우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평가

[1] 후보자TV토론회 국민평가단 운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TV토론회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TV토론을 시청한 후 평가하고, 개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토론회 운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민평가단을 마련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민평가단이 운영된 것은 사상 최초이다.



그림 16 국민평가단의 TV토론회 시청 장면

1) 국민평가단 구성

17개 시·도에서 총 510명(시·도당 평균 3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은 성별로는 남자는 215명, 여자는 295명으로 분포되었으며, 연령대 별로는 30대 이하 279명, 40대 113명, 50대 84명, 60대 31명, 70대 3명으로 나타나 30대 이하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였다.

표 4-1. 국민평가단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총계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계	510	215 (42.2%)	295 (57.8%)	279 (54.7%)	113 (22.2%)	84 (16.5%)	31 (6.0%)	3 (0.6%)

직업별로는 대학생 159명, 주부 126명, 회사원 87명, 자영업 26명, 공무원 15명, 교직원 12명, 기타(무직 포함) 85명으로 나타났다.

표 4-2. 국민평가단 직업별 현황

구 분	총 계	대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교직원	무직	기 타
직업별	510	159 (31.2%)	126 (24.7%)	87 (17.1%)	26 (5.1%)	15 (2.9%)	12 (2.4%)	20 (3.9%)	65 (12.7%)

2) 국민평가단 운영시기 및 장소

표 4-3. 국민평가단 운영장소와 시기별 현황

구분 시도	운영(시청)장소				운영시기			비고
	소계	토론회장 방청	방송사내 모니터실	방송사외 모니터실	소계	녹화 (방송)시	녹화 (방송)이후	
서울	2	—	—	2	2	—	2	
부산	2	—	—	2	2	—	2	
대구	4	—	—	4	4	2	2	
인천	2	—	—	2	2	—	2	
광주	2	—	2		2	2	—	
대전	4	—	2	2	4	2	2	
울산	2	—	2		2	2	—	
세종	4	—	2	2	4	2	2	
경기	2	—	—	2	2	—	2	
강원	17	—	—	17	17	6	11	
충북	4	—	—	4	4	—	4	
충남	8	—	2	6	8	2	6	
전북	2	2	—	—	2	2	—	
전남	2	—	—	2	2	2	—	
경북	6	—	—	6	6	4	2	
경남	2	2	—	—	2	2	—	
제주	3	—	—	3	3	—	3	
총계	68	4	10	54	68	28	40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68회의 후보자TV토론회에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평가단은 토론회장에서 토론회를 직접 방청하거나 스튜디오 내 모니터링 실 또는 스튜디오 외 모니터링 실 등에서 토론회를 함께 시청한 후 토론회를 평가하였다. 운영시기는 녹화(방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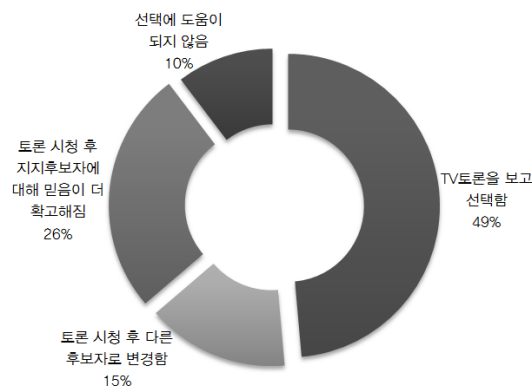
모니터링을 한 경우가 28회(41.2%), 녹화(방송) 이후 모니터링을 한 경우가 40회(58.8%)로 나타났으며, 운영장소는 토론회장 방청 4회(5.9%), 방송사내 모니터링 10회(14.7%), 방송사 외 모니터링 54회(79.4%)로 나타났다.

3) 국민평가단 설문조사 결과(요약)

가. 후보자TV토론의 영향력

TV토론이 후보자 선택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TV토론을 시청하고 결정했다는 의견(48.5%), 다른 후보자로 변경했다는 의견(15.1%), 지지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의견(25.9%)으로 나타나 TV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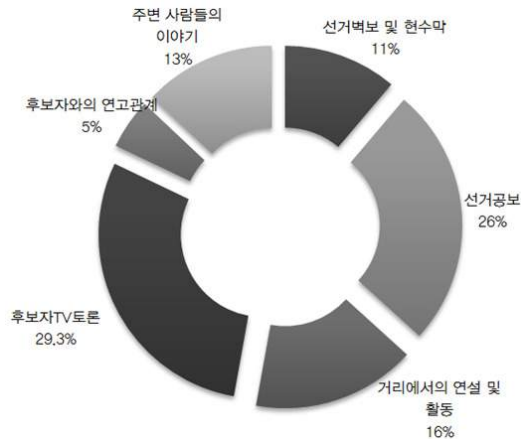
표 4-4. 후보자선택에 있어서의 TV토론의 영향력



나. 지지후보자 선택시 영향을 미친 선거운동방법

지지후보자 선택시 영향을 미친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TV토론(29.3%), 선거공보(25.6%)로 나타나 후보자TV토론이 지지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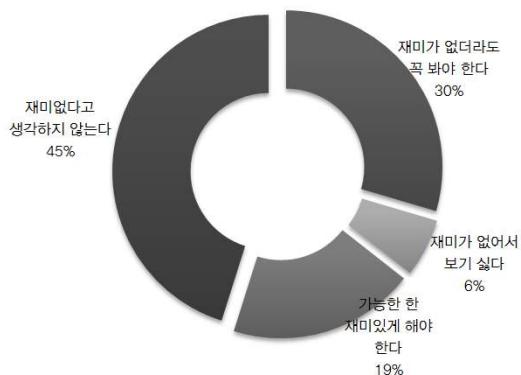
표 4-5. 후보자선택시 영향을 미친 선거운동방법



다. 후보자TV토론의 흥미도 등

후보자TV토론이 재미없다는 지적에 대한 평가단의 생각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45.1%)이 많았으나, 재미가 없더라도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꼭 봐야한다는 의견(29.5%), 유권자가 시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가능한 한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19.3%)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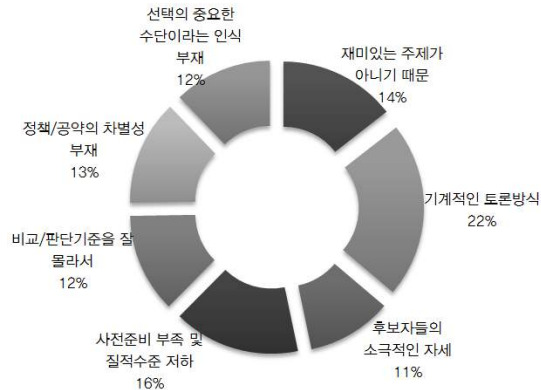
표 4-6. TV토론이 재미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후보자TV토론이 재미없다고 응답한 경우,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토론방식 (21.7%), 후보자들의 토론준비 부족 및 질적 저하(15.7%),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자세

(10.5%) 등으로 나타나 토론방식의 다양화, 후보자들의 토론능력 향상 및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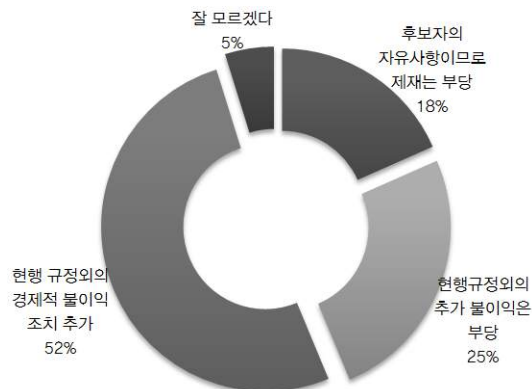
표 4-7. 후보자TV토론이 재미없는 이유



라. 후보자의 불참에 대한 제재수단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TV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87.8%)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TV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의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51.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과태료 부과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수단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TV토론회 불참시 제재수단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 6. 26.(목)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평가회의는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과 간사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주요 토의 내용은 [표4-9]와 같다.



그림 17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선거 평가회의 장면

표 4-9.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선거 평가회의 주요내용

시도명	주요 토의 내용
서울	25개 구위원회에서 사전투표기간 전에 모든 토론회를 녹화·방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론조사기간 조정 등(법 개정) 일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광역단체장 토론회 국민평가단 대다수가 토론회의 흥미성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시·도홍보과의 유일한 법정사무인 토론회 업무를 사건·사고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부산	-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은 TV토론 관리결과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현재의 자문(전문)위원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함. - 부산의 경우 지역민방인 KNN의 시청률이 공영방송사보다 높았으므로 지역민방도 토론회 개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지지도, 선호도, 적합도 등 여론조사결과로 초청대상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명확한 적용기준이 필요함. - 후보자의 20장 이내의 낱장자료 지참 규정은 현장 제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료지참을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함.
대구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관리가 핵심 업무로 부각되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토론회 업무 담당 직원들 스스로의 인식제고가 필요함. - 주도권토론방식 도입으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 시청률 제고에 도움을 주었다고 봄. - 민영방송사의 참여, 여론조사 시기의 조정, 합동토론회 등의 개최방법, 중계방송시간대 고정 등 제도개선 검토가 있어야 함.
인천	국민평가단 운영에 있어 TV토론 시청 후 평가단을 몇 개의 소분임으로 나누어 토의한 바,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하였고 평가단 운영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시도명	주요 토의 내용
대전	-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2.9%)이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0.6%)보다 높았던 결과로 볼 때, 시청률에 있어서도 토론방식의 흥미성보다는 방송시간대가 더 중요하다고 봄. - 효과성 측면에서 동시중계보다는 토론횟수를 늘려 심도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보급률이 높은 모바일의 다시보기는 이용자의 요금부담 발생 등 제약이 있는 실정임.
울산	- 울산 북구의 경우 2인 자유토론방식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다른 곳과 비교하면 시청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음. - 프라임시간대를 확보한다면 후보자측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유권자도 많이 보게 되어 후보자토론회가 중요한 선거운동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임. - 여론조사 기간 등의 개정이 필요함.
강원	- 사회자를 유명 연예인 등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에서 류현진 선발 야구중계로 개최일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강력히 항의하여 기 결정된대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음.
충남	선거운동용 옷, 어깨띠 착용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북	토론회는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국민평가단의 의견이 있었는 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기법 훈련, 연수 기획의 확대가 중요함.
전남	- 동시중계방송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1개의 방송사만 방송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면 함. - 광주·목포·여수MBC는 각각의 개별방송사로 보아 시간대편성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 바, 주관방송사는 지역민방도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제주	- 동시중계보다는 좋은 시간대 확보와 민영방송의 토론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봄. - 토론방송의 재미를 위하여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OX퀴즈방식을 진행해보기도 하였음.

【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 6. 26.(목)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언론학회(회장 김동규, 건국대 교수)와 공동 주최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의 축사에 이어 한진만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운영상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발제: 제주대 김경호 교수)을 제1주제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곽상욱 오산시장, 정극원 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김찬태 KBS 선거방송전문PD,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또한, ‘2014년 6.4 서울시장선거 TV토론에 대한 효과분석’을 제2주제(발제: 경기대 송종길 교수)로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교수, 박종민 경희대 교수, 정일권 광운대 교수, 박세미 MBC PD, 이종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그림 1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장면

표 4-10.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현황

구분	주제	발제자	토론자
제1주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김경호 (제주대)	설동호(대전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곽상욱(오산시장) 정극원(대구대/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김찬태(KBS), 한규섭(서울대)
제2주제	2014년 6.4 서울시장선거 TV 토론에 대한 효과분석	송종길 (경기대)	김춘식(한국외대), 박종민(경희대) 정일권(광운대), 박세미(MBC) 이종희(중앙토론위)

특히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을 토론자로 초청하는 등 후보자TV토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방송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후보자TV토론회의 문제점 분석과 종합적 평가를 통해 선거방송토론 제도개선 방향과 대안이 논의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과 간사, 학회 회원, 일반인 등 총 100여명



그림 19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토론자 발표 장면

이 참석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 TV토론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TV토론 전반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다. 특히, 선거별 후보자TV토론회의 내용 및 진행방식 등을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을 진행하면서 후보자TV토론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평가하고 유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후보자토론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사)미디어전략연구소(연구책임자 송종길 경기대 교수, 공동연구자 홍성철·오경수 경기대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의 TV토론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TV토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주특별시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거주민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를 1곳 선정, 그곳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TV토론을 분석했다.

먼저 TV토론의 형식과 주제, 질문 및 답변의 심층성 등을 바탕으로 TV토론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TV토론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자들은 토론 중 답변을 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37.7%에 불과했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62.3%에 달해 근거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들이 실제 TV토론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TV토론이 이뤄진 직후인 5월 30일부터 3일 동안 TV토론을 시청한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 56.3%는 TV토론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들의 6%는 “매우 유익했다”로, 또 62.8%는 “다소 유익했다”는 등 약 68.8%가 유익하다고 답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69.1%는 TV토론회의 시청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TV토론을 통해 자신의 지지후보를 바꾸겠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으며 34%가 “기존 지지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 지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토론에는 실망했지만 후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TV토론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지만 실제 지지후보자를 바꾸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한 준비과정, 진행상황, 개최결과 등을 정리하여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를 발간하였다.

본문은 ‘개관 및 특징’, 토론회 사전준비·관리 및 개최 결과 등을 담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국민평가단 운영결과와 평가회 개최실적을 담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등 총 4장으로 구성하였다. 부록에는 주요업무 추진 연표, 보도자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 후보자토론회 평가세미나 자료 등을 수록하였다.

이 백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국회도서관, 사법·행정기관 및 정당, 유관기관 등에 배부되었다.



그림 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표지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우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별 TV토론회 관련 각종 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였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후보자TV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영방송사의 동시중계무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유권자 시청률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시사항 이행 등 유권자 시청편의 확대 및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평가대상은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상황이었으며, 평가분야로는 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 시·도교육감선거 후보자 TV토론회 관리, 유권자 참여 및 관심제고를 위한 중앙 지침 이행도, 국민 흥미유발을 위한 노력 및 자체사업, 정황파악 및 보고 등 적시성, 신속·정확도 등 우수·미답사례 등이었다.

선정결과, 최우수는 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우수는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장려는 부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각 선정되었다.

Chapter V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 1.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 2. 위원 워크숍 개최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와 관련하여 TV토론주간(7.17.~24.) 운영하였고 사전투표일 전까지 후보자TV토론회 개최를 완료하고, 방송사와의 좋은 시간대 편성을 위한 협의 진행과 이슈 부각형 홍보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수립·시달된 관리지침의 틀을 유지하였다.

2014. 7. 30.(수) 실시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는 15개 국회의원선거구에서 총 20회(대답·토론회 15회, 합동방송연설회 5회)가 개최되었다.

표 5-1.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현황

(단위 : 회)

구 분	선거 구수	계	대답·토론회				방송연설회		
			소개	초청	비초청	합동	소개	합동	비초청
국회의원선거	15	20	15	15	-	-	5	-	5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에는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후보자TV토론 평가 및 공직선거법 등 개정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1】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책임 관리하에 중계방송 일시·장소 협의, 사회자 추천, 여론조사 수집 등 통일성을 기하는 사무에 있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토론의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의제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주도권 토론방식을 대부분의 TV토론회에서 도입함으로써 역동성과 흥미를 제고하였다.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나, 전국적인 관심지역인 전남순천시곡성군 후보자TV토론회의 경우 5.6%의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 6. 26.(목)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 책임 관리하에 좋은 방송시간대 확보를 위한 방송사와의 협의 강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TV토론회 개최완료,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 필수적 실시 등 주요 전략목표를 시달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나타난 문제점이 재·보궐선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상·하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 지휘·감독체제 구축, 방송사와의 좋은 시간대 편성을 위한 협의 등을 통하여 후보자TV토론회가 정책선거 실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TV토론주간(7. 17~24)을 지정하고 관리상황반을 운영하여 총 20회 후보자TV토론회를 사전투표일 전에 개최(중계방송)완료하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자막방송 실시, TV토론 가이드북 제공, 후보자·유권자용 TV토론 홍보 동영상 제작·보급,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스마트폰·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인터넷 언론사 및 공공기관 후보자TV토론 개최일정 안내 및 쟁점 부각형 홍보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효과적인 토론회 관리를 위해 실시했던 관리대책 등을 재·보궐선거에서도 적용하였다.

중계방송 현황은 중계방송형태별로 총 20회의 중계방송이 주관방송사의 단독중계로 방송되었으며 재방송은 11회였다.

표 5-2. 중계방송형태별 중계방송 현황

(단위: 회)

구 분	개최 횟수 (방송횟수)	최초 중계방송								재방송			
		주관방송사 단독중계방송				2개이상 방송사 동시중계방송							
		소개	토론	대담	연설	소개	토론	대담	연설	소개	토론	대담	연설
국회의원선거	20(31)	20	15	－	5	－	－	－	－	11	8	－	3

중계방송사 유형별로는 재방송을 포함하여 KBS 8회, MBC 6회였으며 종합유선방송사는 17회였다.

표 5-3. 중계방송사 유형별 개최 현황

(단위: 회)

구 분	방송 횟수	지상파			종합유선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인터넷 언론사등	기타
		KBS	MBC	민영방송사				
국회의원선거	31	8	6	-	17	-	-	-

방송일자별로는 선거운동기간개시일인 7월 19일부터 사전투표일전일인 24일까지 총 20회가 방송되어 사전투표일인 7월 25일 이전까지 모두 개최 완료하였다.

표 5-4. 방송일자별 개최 현황

(단위: 회)

구 분	계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20	2	2	2	4	8	2	사 전	투표일
대담·토론회	15	1	2	2	2	6	2	-	-
방송연설회	5	1	-	-	2	2	-	-	-

방송시간대별로는 오전시간대에 5회(대담·토론회 4회, 방송연설회 1회), 오후시간대에 5회(대담·토론회 4회, 방송연설회 1회), 저녁시간대에 6회(대담·토론회 6회), 심야시간대에 4회(대담·토론회 4회, 방송연설회 3회)가 방송되었다.

표 5-5. 방송시간대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계	07:00 ~ 09:00	09:00 ~ 11:00	11:00 ~ 13:00	13:00 ~ 15:00	15:00 ~ 17:00	17:00 ~ 19:00	19:00 ~ 21:00	21:00 ~ 23:00	23:00 ~ 01:00
계	20	3	2	-	4	1	-	1	5	4
대담·토론회	15	2	2	-	4	-	-	1	5	1
방송연설회	5	1	-	1	-	1	-	-	-	3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모든 토론회에 수화통역을 실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산구울의 경우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후보자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홈페이지에서 4,688회, 모바일 앱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1,202회가 조회되었다.

표 5-6.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서울 동작구을	초청	토론회	현대HCN 서초 스튜디오	7.23.(수) 10:00	7.23.(수) 21:00	현대HCN	김민기 (교수)	나경원(새) 기동민(민) 유선희(통) 노회찬(정)	
	비초청	연설회		7.23.(수) 12:16				김종철(노)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초청	토론회	부산 MBC	7.18.(금) 10:30	7.20.(일) 08:00	부산MBC	김영일 (교수)	배덕광(새) 윤준호(민)	
광주 광산구을	초청	토론회	광주 MBC	7.18.(금) 10:00-11:10	7.19.(토) 09:40-10:50	광주MBC	조현성	송환기(새) 권은희(민) 장원섭(통) 문정은(정)	
	비초청	연설회		7.18.(금) 11:30-11:40				양청석(무)	
대전 대덕구	초청	토론회	KBS대전 공개홀	7.24.(목) 14:00-15:00	7.24.(목) 14:00-15:00	KBS대전	정순오	정용기(새) 박영순(민)	
울산 남구을	초청	토론회	울산MBC 스튜디오	7.21.(월) 23:10	7.21.(월) 23:15-00:15	울산MBC	김진영	박맹우(새) 송철호(무)	
경기 수원시을	초청	토론회	티브로드 수원방송	7.23.(수) 15:00-17:00	7. 24.(목) 14:00-15:47	티브로드 수원방송	정승환	정미경(새) 백혜련(민) 윤경선(통) 박석종(정)	
경기 수원시병	초청	토론회	티브로드 수원방송	7. 21.(월) 21:00-22:30	7. 21.(월) 21:00-22:30	티브로드 수원방송	장성근	김용남(새) 손학규(민) 임미숙(통) 이정미(정)	
경기 수원시정	초청	토론회	티브로드 수원방송	7. 21.(월) 15:00-17:00	7. 22.(화) 14:00-15:30	티브로드 수원방송	정승환	임태희(새) 박광운(민) 김 식(통) 천호선(정)	
	비초청	연설회		7. 21.(월) 17:00-17:30	7. 22.(화) 15:30-15:43			정진우(노)	

선거구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경 기 평택시을	초청	토론회	티브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	7. 22.(화) 10:30-12:00	7. 23.(수) 14:00-15:30	티브로드 기남방송	정송환	유의동(새) 정장선(민) 김득중(무)	
경 기 김 포 시	초청	토론회	CJ헬로비 전부천김 포방송	7. 21.(월) 14:00-15:30	7. 23.(수) 21:30-23:00	CJ헬로비 전부천김 포방송	이지훈	홍철호(새) 김두관(민) 김성현(정)	
충 북 충 주 시	초청	토론회	KBS충주 공개홀	7.23.(수) 19:20-20:25	7.23.(수) 19:20-20:25	KBS충주	김영중	이종배(새) 한창희(민) 김종현(통)	
충 남 서 산 시 태 안 군	초청	토론회	대전MBC 공개홀	7.22.(화) 10:00-12:00	7.23.(수) 10:00-12:00	대전MBC	원성수	김제식(새) 조한기(민) 박태권(무)	
전 남 순 천 시 곡 성 군	초청	토론회	KBS순천 공개홀	7.23.(수) 22:00-23:20	7.23.(수) 22:00-23:20	KBS광주 KBS순천	지창환	이정현(새) 서갑원(민) 이성수(통) 구희성(무)	
	비초청	연설회	KBS광주 공개홀	7.21.(월) 11:30	7.23.(수) 23:20-23:30			김동철(무)	
전 남 나 주 시 화 순 군	초청	토론회	KBS광주 공개홀	7.22.(화) 22:00-23:20	7.22.(화) 22:00-23:20	KBS광주	이인수	김종우(새) 신정훈(민)	
	비초청	연설회		7.21.(월) 10:30	7.22.(화) 23:20-23:30			강백수(무)	
전 남 담 양 군 합 평 군 영 광 군 장 성 군	초청	토론회	광주MBC 공개홀	7.18.(수) 14:00-15:15	7.20.(일) 08:00-09:15	광주MBC	조현성	이종효(새) 이개호(민)	

주) 정당명 약칭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진보정의당(정), 통합진보당(통), 무소속(무)

한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중인 후보자의 수원시정국회의원보궐선거의 연설회 참석 가능 여부가 문제되어 수원시영통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연설회 정○○ 후보자 참석 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7.17.)하는 등 후보자의 연설회 참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후보자의 보석신청이 허가되어 연설회 참석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2〕 위원 워크숍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 9. 19.(금) 충남 보령 소재 비체펠리스 세미나실에서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과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7.30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평가회를 동시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위원회 10년사 초안 등 각종 현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7.30.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토론관련 법규 개정의견 토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의견을 추진, 재검토, 미추진 등으로 나누어 폭넓게 검토되었다.



그림 21 위원 워크숍 개최 장면

Chapter VI

정책토론회 관리

-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 2.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 관리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해에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임기만료의 선거가 있는 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이에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상호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총 3회 개최하였다.

표 6-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제1차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제3차 토론회
개최일시	2014. 3. 27. (목) 10:00~12:00	2014. 5. 7.(수) 10:00~12:00	2014. 5. 8.(목) 22:50~24:50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토론자	원내대변인 등	정책위의장 등	대변인 등
토론분야	복지·교육	경제·노동	정치·선거
사회자	홍기섭 (KBS 보도위원)	김상철 (MBC 논설위원)	홍기섭 (KBS 보도위원)
질문자 (패널)	-	전문가패널 (김남근, 한상완)	국민질문 (이순옥 외 5명)
중계방송	KBS, MBC, SBS 동시생중계	KBS, MBC, SBS 동시생중계	KBS 생중계, MBC(5.9. 10:00)·SBS (5.9. 12:30) 녹화중계

각 회차별 토론분야는 제1차 토론회는 복지·교육분야, 제2차 토론회는 경제·노동분야, 제3차 토론회는 정치·선거분야로 나누어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토론진행방식은 각 차수의 토론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진행방식을 활용하였다. 제1차 토론회의 경우 토론자간의 심층토론, 제2차 토론회는 전문가 패널 방식, 제3차 토론회는 국민질문 방식을 활용하였다.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선거일전 90일(3.6.)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전일(5.16.)까지의 기간 중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제1차 토론회는 3월 27일 개최되었다. 제2차 토론회는 당초 4월 21일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로 인해 두 차례 연기한 후, 5월 7일에 개최하였고, 제3차 토론회는 그 다음날인 5월 8일에 개최하였다.

제1차·제2차 토론회는 방송 3사(KBS, MBC, SBS)에서 동시중계를 실시하였으나, 제3차 토론회는 공영방송사간 동시중계 편성이 어려워 중계주관방송사인 KBS가 생중계하고, MBC와 SBS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 12시 30분에 각각 녹화중계 방송하였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정책토론회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NEC TV를 통해 처음으로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2) 초청 정당 및 토론자 선정

토론자는 차수별로 토론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 또는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 결정하여 각 정당에 통보하였으나, 당내의 사정 등을 이유로 동일한 직위의 토론자 참석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제1차 토론회는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토론회에 나오기를 거부하여 다른 정당에서도 연쇄적으로 토론자를 변경하여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제2차 토론회는 개최일시가 2차례 연기됨에 따라 토론자 일정 등의 변경으로 토론자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제3차 토론회는 당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는 등 당내 사정 등을 이유로 당대표 또는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토론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제1차 토론회 개최일에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신고처리가 완료되어 토론회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자막을 표출하였다.

표 6-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초청정당 및 토론자 현황

구분	정당명	직위	성명
제1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 수 현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 미 희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 진 후
제2차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	이 만 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	문 병 호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선 동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 원 석
제3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 정 애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이 상 규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3) 소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회의 주제와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학계, 법조계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현황

구성위원	운영기간	직무
이성룡 상임위원, 김찬태, 송기원, 허익범, 오미영 위원	2014. 2. 20.(구성) ~ 2014. 5. 8.까지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 진행방식(안) 검토 • 토론주제(안) 검토 • 사회자 검토 • 질문자·질문사항(안) 검토

운영기간은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세 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종료되는 날 까지이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 질문자, 질문사항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4) 사회자·질문자 선정

토론회의 사회자는 각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준비소위원회에서 경력 등을 검토하여 압축한 후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사회자는 제1차와 제3차에 KBS 홍기섭(보도위원), 제2차는 MBC 김상철(논설위원)로 선정되었다. 사회자는 사전에 질문사항 등을 작성하고,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토론회 진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실하게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표 6-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구분	토론분야	사회자	소속
제1차	복지, 교육	홍기섭	KBS(보도위원)
제2차	경제, 노동	김상철	MBC(논설위원)
제3차	정치, 선거	홍기섭	KBS(보도위원)

한편, 토론회 진행방식은 세 차례의 토론회마다 각각 다른 진행방식을 사용하였다. 제1차 토론회는 토론자간의 심층토론으로 진행하였고, 제2차 토론회는 경제와 노동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김남근(참여연대집행위원장, 변호사), 김종석(홍익대 교수) 2명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였으나, 세월호 사고로 토론회 개최가 연기됨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패널이 있어 김남근, 한상완(현대경제원 총괄연구본부장)으로 질문자를 변경하였다.

특히, 제3차 토론회는 국민질문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질문자 6명을 선정하여 실제 토론회에서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토론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6-5.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자 선정 현황

구분	제2차(전문가패널)	제3차(국민패널)
질문자	김남근(참여연대집행위원장, 변호사) 한상완(현대경제원 총괄연구본부장)	이순옥(여), 이하연(여), 이용석(남), 이재상(남), 김동수(남), 최영돈(남)

5) 주제 선정

토론분야는 제1차 토론회는 복지·교육분야, 제2차 토론회는 경제·노동분야, 제3차 토론회는 정치·선거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각 토론회별 토론의제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각 단체에 의제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된 의제, 전문위원들이 추천한 의제, 각 정당이 추천한 의제등을 참고하는 동시에 질문 공모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에 참고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차수별로 토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 해당 상임위 소속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문 공모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질문공모를 실시하였다.

표 6-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선정 현황

구분	분야	주 제
제1차	복지, 교육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료체계 개선 방안)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 (역사교과서 문제, 사교육비 문제)
제2차	경제,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임금체계 개편 문제
제3차	정치, 선거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국정원 개혁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6) 진행방식 결정

토론 진행방식은 차수별로 토론분야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진행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자를 선정(제2차 전문가패널, 제3차 국민질문자)하여 활용하였고, 지금까지의 정책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시간총량제 자유토론방식을 확대 실시하여 토론회의 역동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토론자가 효율적으로 주어진 토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2가지의 소주제에 총 10분의 시간총량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정하였고, 종전보다 사회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보다 흥미로운 토론회가 되도록 준비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해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토론자간 자유토론을 한 후 전문가패널이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문가패널 2명에게 각 주제 별로 총 22분씩을 주고 주어진 시간범위 내에서 질문의 순서와 질문·답변 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고, 패널들이 자유롭게 보충질문을 하고 토론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사전에 선정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입장을 기초연설방식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기초연설의 발언순서는 맺음말 순서가 A/B/C/D임을 고려하여 B/C/D/A 순으로 결정하였다.

제3차 토론회는 시기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1주제(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국민이 묻는다!’라는 코너로 4개의 국민질문에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제2·3주제는 각 1개의 국민질문 후 토론자간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7) 설명회 개최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등 개최사항 공표 후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회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표 6-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제1차	2014. 3. 21.(금) 15:00	국회 의원회관 842호
제2차	2014. 4. 11.(금) 15:00	국회 의원회관 835-1호
제3차	2014. 4. 30.(수) 15:00	국회 의원회관 842호

제3차 설명회 개최 이후에도 각 정당의 토론자가 변경되어, 토론회 개최 전일 사무국에서 각 정당의 토론자를 직접 방문하여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8) 토론회 개최 홍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토론회 개최안내 팝업존에 파일을 게시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토론회 개최를 공표한 즉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중계방송사에 토론회 방송일시, 토론자와 토론주제 등 안내자막방송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다.

다만, 제2차·제3차 토론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가적인 애도분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토론회 개최에 대한 홍보를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종료 이후에 주요 토론자의 발언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9) 토론회 장소 설비

토론회 개최 장소는 주관방송사 스튜디오를 활용함에 따라 방송사측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토론회 진행방식과 질문자 등 구성과 형식에 적합한 설비가 되도록 협의하였다. 세차례의 토론회 모두 토론자와 사회자가 마주보는 맞대면 구조로 배치하여 집중적인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토론회 중앙 원형구조물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새로운 CI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제2차·제3차 토론회는 패널들의 참여로 인해 30여명의 방청객 좌석을 설비하였고, 수화통역 세트를 별도로 설비하여 수화방송도 병행하였다.



그림 2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설비



그림 23 청중석 설비



그림 24 수화통역 설비

10) 토론회 진행

제1차 토론회 진행(3. 21.)은 토론진행표 및 대본에 따라 진행하되, 각 토론자별로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토론회장에 설비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당관계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였고, 중계주관방송사 안전관리팀에 출입자 관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역동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토론의 주요 내용 및 논점 등을 중간에 정리하고, 특정토론자에게 즉각적인 입장을 질문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이 준비해

온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활발한 토론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자유토론시 토론자의 1회 발언이 3~4분 정도로 길어지기도 하여, 총 10분의 총량시간을 3~4회로만 발언하여 다소 지루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해, 1회 발언을 약 2분 정도로 시간을 제한하는 기존의 세부 방식을 다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림 25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장면



그림 26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장면

제2차 토론회(4. 11.)는 개최 당일 리허설 현장에서 한 토론자가 직위를 변경하여 호칭해 줄 것을 요청해 음에 따라 사회자에게 변경 안내하도록 하고 자막표출도 변경시켰다. 세월호 관련 기초발언과 함께 다소 숙연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시작되었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하여 진행방식 결정 이후에 세월호 관련 기초연설이 추가되어 진행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지만,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진행하였다.

이 토론회는 경제와 노동현안에 대해 각 당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전문가 패널의 보충질문으로 다양한 논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패널의 보충질문은 개별질문과 공통질문이 고르게 활용되었고, 패널 질문 시간도 사회자가 적절히 안내하여 운영하였다. 자유토론 시 토론자 1회 발언을 가급적 2분 정도로 배정하고, 토론자에게 잔여시간 고지와 시간엄수를 위해 잔여시간 10초부터는 시간 표시를 기존의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하여 깜빡이도록 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토론자별로 발언이 길어지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자막방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토론회 종료 직후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수화방송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여 제2차 토론회부터는 수화방송까지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중계방송사별로 자막과 수화 등을 별도로 제작하

였으나, 제2차 토론회부터는 중계주관방송사에서 자막과 수화를 일괄 제작하여, 수중계하는 방송사에서 그대로 화면을 받아 중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

제3차(4. 30.) 토론회는 개최 당일 밤(22시경) 세월호 사고 보도 등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방송국에 항의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여 방송국 외곽에 수많은 경비인력이 대기하고, 방송사 안전관리팀에서 정면 출입구를 전면 통제함에 따라 토론자와 방청객 등 참석자들에게 서쪽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재안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27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장면

한편, 방송시작 전에 방송국 현장에서 질문자들에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스튜디오에 입실한 이후에도 카메라 시선 처리 등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음향테스트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 국민질문자로 선정된 질문자가 개최전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민질문자 5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방청객을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토론자들이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한 방청객이 토론 분위기에 맞지 않게 웃는 등 적절치 않는 행동을 하여 토론회 진행도중 퇴장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각 정당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 발언을 하여 다소 숙연한 분위기로 토론이 시작되었고, 토론회 진행 중 일부 토론자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국민질문자의 질문에 모든 토론자가 충실히 답변하는 등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국민질문자는 각각 메모지, 노트 등에 질문내용을 적어서 준비해왔고, 일부 질문자는 질문을 외워서도 하고, 다소 긴장한 질문자는 미리 써온 질문지를 보면서 읽는 등 자연스럽게 국민질문코너가 진행되었다. 또한, 불참한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토론 중 화면으로 표출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

11) 토론회 시청률

중계주관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종료 직후 시청률 현황(AGB닐슨미디어 리서치 기준)을 파악하였다. 제2차·제3차 토론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로 토론회 개최 홍보를 최소화하여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보다 다소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

표 6-8.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구 분		AGB(전국기준)			
		KBS1	MBC	SBS	계 (동시간중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06년)	1차(3.25. 10:00~) 정책위의장	1.6%	0.7%	—	2.3%
	2차(4.15. 10:00~) 원내대표	2.0%	0.9%	—	2.9%
	3차(5.12. 22:00~) 당대표	4.4%	2.2%	—	6.6%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0년)	1차(3.23. 10:00~) 원내대표	2.0%	0.9%	0.5% (14:00~)	2.9%
	2차(4.23. 10:00~) 정책위의장 등	1.7%	0.9%	0.7% (12:00~)	2.6%
	3차 (5.6. 23:10~) 당대표	2.8%	2.3%	1.0% (5.7. 12:00~)	5.1%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4년)	1차(3.27. 10:00~) 원내대변인 등	1.9%	1.0%	1.0%	3.9%
	2차(5.7. 10:00~) 정책위의장 등	1.8%	0.7%	0.6%	3.1%
	3차(5.8. 22:50~) 대변인 등	2.8%	0.9% (5.9. 10:00~)	0.6% (5.9. 12:30~)	2.8%

〔2〕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4. 7. 7.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하기로 2014. 6. 13. 열린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토론회 개최시기 7월 초를 결정한 배경에는 6.4 제6회 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실시되는 7.30.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으로 불릴 만큼 관심이 집중되어 이를 계기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기임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4. 11. 12. KBS스튜디오에서 개최하기로 2014. 10. 17. 열린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사전에 장소섭외를 위해 KBS와 업무협의를 통해 개최시기를 11월 중 방송편성에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장소선정 즈음하여는 KBS의 일부스튜디오 내부수리로 인하여 다소 작은 스튜디오를 활용해야 했지만 사전답사결과 진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배정된 스튜디오를 개최장소로 결정하였다.

표 6-9.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제1차 토론회	제2차 토론회
개최일시	2014. 7. 7.(월) 10:00~12:00	2014. 11. 12.(수) 10:00~12:00
개최장소	MBC D 스튜디오	KBS TS-5 스튜디오
토론자	원내대변인 등	혁신위원장 등
토론분야	국정현안	정치
사회자	김상철 (MBC 논설위원)	김진석 (KBS 기자)
중계방송	KBS, MBC, SBS 동시생중계	KBS, MBC, SBS 동시생중계

2) 토론자(초청대상 정당) 선정

2014년 제1차 토론회의 토론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어 각 당 원내대표를 토론자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주요 정당에서 원내대변인을 토론자로 하는 참석승낙서를 보내와 타 정당들도 이에 질세라 연쇄적으로 토론자를 변경하여 원내대변인 등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제2차 토론회는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등이 주요 정당의 당대표를 방문·면담을 통해 토

론회에 정당의 당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대표 토론회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원내대표와 혁신위원장을 토론자로 추천해 왔다.

표 6-10.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구분	제1차 토론회	제2차 토론회
토론자	윤영석(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이상규(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정의당 원내대변인)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오병윤(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정의당 정치독바로특별위원장)

3) 소위원회 구성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학계, 법조계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1.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위원	운영기간	직무
제1차	이성룡 상임위원, 김찬태, 송기원, 허익범, 오미영 위원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2014.6.12~7.7)	• 진행방식(안) 검토 • 토론주제(안) 검토 • 사회자 후보 검토 • 질문사항(안) 검토
제2차	이성룡 상임위원, 김찬태, 송기원, 허익범, 김정택 위원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2014.10.14~11.12)	• 진행방식(안) 검토 • 토론주제(안) 검토 • 사회자 후보 검토 • 사회자 도입 문안(안) 검토

운영기간은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정책토론회를 종료하는 날까지이며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 사회자, 질문사항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4) 사회자 선정

사회자는 중계주관방송사의 방송인으로 검토되었고, 제1차 토론회는 MBC 김상철 논설위원, 제2차 토론회는 KBS 김진석 기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특히 2014년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는 사회자의 역할이 강화된 진행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회자는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토론주제별 논점 검토와 진행방식 운용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회 준비에 임하였다.

표 6-12.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구분	토론분야	성명	직업
제1차	국정현안	김상철	MBC 논설위원
제2차	정 치	김진석	KBS 기자

5) 토론주제 선정

정당정책토론회의 의제수집은 토론분야에 대해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의제를 수집하는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4년 정당정책토론회는 국민적 여론 수렴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국민참여마당에 ‘국민제안’ 코너를 개설하여 일반국민들이 토론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의제도 주제 선정시 참고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 토론회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대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전문가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7월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시의성을 고려하여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두 가지 소주제로 정하였다.

표 6-1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대주제	소주제	토론논점 등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 정부조직개편 - 정부조직 개편 방향(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대한 입장 - 정부조직 개편의 적절성 여부 -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 - 김영란법 국회 통과 왜 안되나?(적용범위와 대상 등) - 관피아 개혁 방안(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기준, 행시 폐지 등)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 한·중·일 관계 -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 한일관계 경색 국면 해법(대화 시기와 방법 등) - 고노담화 논란, 집단자위권 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

제2차 토론회는 ‘정치개혁, 어떻게 이를 것인가?’라는 대주제로 하고, ‘국회개혁(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선진화법 등)’, ‘정당개혁(정당공천제 등)’, ‘선거개혁(선거구획정 문제 등)’으로 세 가지 소주제로 정하였다.

표 6-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대주제	소주제	토론논점
정치개혁, 어떻게 이를 것인가?	국회개혁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의원겸직금지, 국민소환제, 출판 기념회 금지 등 - 국회선진화법 등
	정당개혁	정당공천제 등
	선거개혁	선거구획정 문제 등

6) 진행방식 결정

2014년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사회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좀더 역동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사회자 주도의 자유토론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2~3가지 소주제를 통틀어 토론자별로 총량의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토론자가 답변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1차 토론회는 최초로 ‘청중과 소통의 시간’ 코너를 마련하여 토론회 내용에 궁금증이나, 당부의 말 등 토론자들과 청중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2차 토론회도 세 가지 소주제를 통틀어 토론자별로 총량의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여기에 기존에 운용되어 온 다소 경직된 방식이었던 ‘사회자 공통질문’을 과감히 생략하여 사회자 도입 멘트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주제 및 논점별로 사회자 문안을 작성·검토하여 활용함으로써 토론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또한 소주제별 자유토론에서 사회자는 논점 등을 제시하고, 사회자가 토론 흐름 등을 고려하여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사회자가 결정하는 등 기존방식보다 사회자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7) 설명회 개최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등 개최사항 공포 후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개 정당 토론자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회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였다. 제1차 토론회의 추첨결과는 A:새정치민주연합, B:정의당, C:통합진보당, D:새누리당 순이었고, 제2차 토론회의 추첨결과는 A:새정치민주연합, B:정의당, C:새누리당, D:통합진보당 순이었다.

표 6-15.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비고
제1차	2014. 7. 1.(화) 15:00	국회 의원회관 84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과
제2차	2014. 11. 4.(화) 15:00	국회 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의실

각 토론방식별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운용시연과 함께 별도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참석자들이 토론방식과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이해를 높였고 아울러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8) 토론회 홍보

정당정책토론회는 토론회 개최 이전, 중계방송사인 KBS, MBC, SBS에 개최안내에 관해 협조요청을 하고, 각 정당에 토론회 시청안내를 위해 이미지파일 게시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토론회 진행중에 사진을 메일 등으로 보내 사후보도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제1차 토론회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개최 이후 기사화가 많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토론회는 토론회 개최 이전, 각 정당에 개최안내 이미지파일을 제공한 것이 정당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재되어 토론회 개최 3~4일전에 언론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계방송사인 KBS, MBC, SBS에 개최안내 및 개최결과에 관해 뉴스보도가 되었고,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 등에 토론회 내용에 대한 지면보도가 비중있게 실리기도 하였으며 여러 사설에서도 논평되기도 하는 등 언론보도 횟수는 총 170여회에 달하였다.

시의적으로 제2차 토론회의 토론주제가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자연스럽게 많이 되었고, 그로 인해 토론회 종료 이후에 사후보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9) 토론회 장소설비

제1차 토론회의 개최장소인 스튜디오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를 세트 중앙 원형구조물에 설치하여 활용하였고, 토론자 좌석 뒤로 청중 70여명이 착석 가능하도록 2열로 의자를 배치하였다. 또한, 제2차 토론회 개최장소인 스튜디오 면적 등이 다소 협소하여 역삼각형의 한 테이블에 모든 토론자가 착석하는 구조로 세트를 설비하였다. 또한 토론회 진행 중 스튜디오내 잔류인원을 현장스텝으로 최소화하는 등 질서유지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0) 토론회 진행

정당정책토론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토론자별 지참 자료 매수 및 화면 표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에 한 토론자는 지참한 사진과 자료 등을 발언 도중에 화면에 보이도록 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과도한 자료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토론회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으나, 발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진·자료 등의 지참 및 화면 표출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거나 사전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이전보다 대폭 증가시킨 67명의 청중을 두고 청중과 소통의 시간 코너를 운영하였는데, 당초 2~4명의 청중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토론자간 자유토론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종료되어 청중 4명의 발언을 듣고 모든 토론자가 답변 한 후 추가로 청중 2명의 발언을 듣고 토론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준비된 발언내용 원고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한 청중 6명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진행 방식은 현장에서 많은 청중을 관리하는 어려움은 다소 있지만, 소주제별로 청중과 소통의 시간을 두고 토론진행상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토론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림 28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청중과 소통의 시간)

제2차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화면구성을 위해 오버숏샷, 투샷 등 자연스러운 토론자의 화면구성을 연출하였으나, 카메라 수, 토론회 세트 및 좌석배치 구조 등으로 인해 모든 토론자의 화면분할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고, 한 토론자의 모두발언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다른 토론자의 옆모습이나 어깨, 손 등이 간혹 함께 표출되는 등 협소한 세트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림 2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

11) 토론회 시청률

제1차 토론회의 시청률은 청중과 소통의 시간 등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분위기의 토론회가 되었으나, 평일 오전에 방송되는 등으로 인해 크게 오르지 못하였다. 제2차 토론회의 시청률은 시의적절한 정치적 현안을 주제로 각 정당의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관례고 관심이 고조되어 제1차 토론회 보다 다소 높은 결과(4.2%)로 나타났다.

표 6-16. 2014년도 정당정책토론회 방송사별 시청률 현황

(단위 : %)

구 분		KBS1	MBC	SBS	계(동시간대)
AGB (전국)	1차	2.1	0.8	1.0	3.9
	2차	2.5	1.0	0.6	4.2

Chapter VII

민주시민토론문화의 육성

- 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 2.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 3.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개최
- 4.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단체등의
토론 지원

민주시민토론문화의 육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과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래유권자의 민주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피치와 토론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청소년 스피치와 토론캠프를 개최하고, 오산학생토론축제와 토론대회를 후원하고 타 기관·단체의 토론대회 등을 지원하였다.

〔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전국대학생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과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4. 8. 28.(목)과 29.(금) 양일간에 걸쳐 KT인재개발원(대전)에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 대회 주관 및 후원



그림 30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장면

이번 토론대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이호은 청운대 교수)와 공동주관하여 대회 주최·주관의 연속성을 꾀하였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DMZ 열차승차권 100매 후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생수 500병 지원과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외에도 EBS, JTBC, TJB

등이 추가로 후원함으로써 사상 최대인 12개의 후원기관(선거연수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리서치, KT estate 등)이 참여하여 창설 10주년 기념에 걸맞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일조하였다.

한편, 대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임정열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에는 팀장 2명과 학회장 등 교수 3명을 위촉하고, 간사로 주무관 1명을 두어 철저한 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의 현안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2) 개최 일자 및 장소

이번 토론대회는 상반기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의 여름방학기간중인 8. 28.(목)부터 8. 29.(금)(1박2일)까지 KT인재개발원 제2연수관(대전)에서 예선과 본선(4강 결정)을 개최하였으며, (준)결승전은 9. 13.(토)에 호암아트홀(JTBC방송사 스튜디오, 서울)에서 개최하여 방송으로 제작하였다.

표 7-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예선(64강 결정까지)			8. 28.(목) 10:00~18:00	KT인재개발원	
4강 결정까지			8. 29.(금) 09:30~15:00		
본선	(준)결승	녹화	9. 13.(토) 14:00~17:30	호암아트홀(JTBC방송사 스튜디오)	
		방영	9. 20.(토) 08:05~09:05	JTBC	

KT인재개발원 내 리빙센터를 본선진출자와 심사위원 등의 숙박시설로 활용하였고, 참가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한편 대회장소인 제2연수관 내 중강당 1개, 강의실 21개실을 확보하여 개·폐회식장과 각 대회장, 참가자대기실, 심사위원실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곳곳에 각종 시설물(현수막, 가로등배너, X배너, 이동안내표지, 실별 안내표지)을 설치·부착하여 대회 참가자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동의 혼란 방지 등 장소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결과 최적의 시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참가하는 대학생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3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장소 설비 등

3) 토론논제

토론논제는 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일반인 78명과 직원 36명 등 총 114명으로부터 공모한 195건에 대하여 토론위원회사무국에서 토론논제의 적합성, 찬·반 논리의 균형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부서 및 대회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선과 본선을 구분한 논제 2개를 선정하였다.

표 7-2.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현황

구분	토론 논제
예선, 결승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본선, 준결승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토론논제별 모든 경기의 찬성·반대 승리팀 분석 결과 예선(보궐선거 관리비용 부담)·본선 논제(여론조사 결과 공표 상시 허용) 모두 반대팀의 승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토론논제의 찬·반 균형성은 어느 정도 대등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참가자 접수

참가자 접수는 2014. 7. 2.(수)부터 7. 25.(일)까지 20여일간 진행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안내 배너 게시, 지난 대회 참가자들에게 이메일·문자 발송, 대티즌·캠퍼스몬(잡코리아)·더콘테스트 등 공모전사이트에도 안

내하는 한편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 등에 참가안내 홍보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회를 안내·홍보하였다.

전국 43개 대학 138개팀 276명(대학 연합팀 15개팀 30명 포함)이 참가신청하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생(총 199명 전년대비 29명, 17.1% 증가)과 충청권 소재 대학생(총 26명, 전년대비 16명, 160% 증가)들의 참여도가 두드러졌고, 경상권 소재 대학생(19명 감소, 전년대비 34.5% 감소)들의 참여는 많이 하락하였다.

대학별로는 전년도에 참가하지 않았던 건국대·경기대·경찰대·공주대·금오공대·목포대 등 16개 대학교가 새로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고려대·서울대·충남대 등의 참가신청이 대폭 늘었는데, 대학교 내 토론동아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대학교 간 참가신청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3.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접수현황(43개 대학 276명) ()은 전년 대비 증감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찰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4(▲4)	2(-)	6(▲6)	8(▲8)	8(▽8)	6(▲2)	2(▲2)	10(▽2)	30(▲15)	8(▲2)
공주대	극동대	금오공대	동국대	대구 가톨릭대	목포대	명지대	부경대	배재대	서강대
2(▲2)	2(-)	2(▲2)	4(▽6)	2(▲2)	4(▲4)	9(▽7)	9(▲1)	5(▲3)	4(▽6)
서울대	서울 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송실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28(▲16)	2(▲2)	8(▽4)	4(▽1)	1(▲1)	2(▲2)	11(▲7)	2(▲2)	12(▽7)	2(▲2)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전북대	충남대	청주대	한국외대	한국 해양대	한동대	한림대
2(▲2)	4(▲1)	9(▲7)	6(▲4)	12(▲10)	4(▲4)	1(▲1)	1(▲1)	6(▽6)	1(▽1)
한양대	홍익대	협성대							
22(▲9)	8(▲4)	1(-)							

다만, 기관메일시스템 자체의 수신확인 통보 미비 등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관메일로의 지속적인 접수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참가신청·접수·결과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여 원활한 참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 토론 진행방식

이번 대회도 제4회 대회부터 진행해 온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역대 대회 결승전 영상을 게시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였다.

표 7-4.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 진행방식

방식	진행시간			
	예선	64강~8강	준결승	결승
① 찬성팀 기초연설	1분	1분	1분	1분
② 반대팀 기초연설	1분	1분	1분	1분
③ 자유토론(팀당)	6분	8분	8분	10분
④ 반대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
⑤ 찬성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
합 계	16분	20분	20분	24분
토론규칙	- 자유토론시의 1회 발언시간은 팀당 2분을 넘지 못함. - 전체 토론시간은 팀원끼리 균등하게 배분 -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되, 토론 중에 제시·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시간, 방식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점 요인			
	자료는 팀당 A4용지 크기 20매(찬성·반대 각 10매) 이내 소지 가능		- 자료 활용 ① 팀당 A4용지 크기 20매(찬성·반대 각 10매) 이내 소지가능 ② 경기당 팀별로 1개의 판넬 사용 허용(방송사 제작)	

경기별 찬성·반대팀 결정은 개별 대회장에서 팀별로 희망하는 찬·반팀을 직접 적어서 제출하게 하여 결정하였고 경합 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였다. 예선부터 4강결정까지는 팀당 A4용지 크기 20매(찬성·반대 각 10매) 이내만 소지 하도록 하였으나, (준)결승전에는 경기당 팀별로 1개의 판넬 사용을 추가 허용함으로써 방송 제작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6) 심사

사전심사는 참가신청시 제출된 참가신청서와 재학증명서, 토론개요서를 바탕으로 제출서류의 형식요건을 심사하였는데, 참가신청한 138개 팀 중 재학증명서(사진)·토론개요서 미제

출이나 마감시각이 지난 후 제출 등의 사유로 탈락된 10팀을 제외한 총 128개 팀을 최종 예선 진출팀으로 결정·안내하였다.

한편, 사전심사에 탈락한 10개 팀에게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를 신청한 팀들의 불참의사 제출 마감기한(8. 24. 24:00) 이후 최종적으로 불참팀 수를 확정된 뒤 예비팀 중 추첨에 의하여 해당 불참팀 수 만큼 예선대회의 참가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림 32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예비팀 추첨 장면

한편, 토론개요서에 의한 심사가 형식적이므로 향후 토론개요서를 작성하지 않게 하고, 선착순으로 대회 진행의 한계인 최대 128개 팀으로 제한하여 모집하는 등 참가신청·접수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사위원은 대회장별로 교수 1명, 선거관리위원회 4~5급 및 6급 직원 각 1명씩 총 3명으로 16개 심사반을 구성하였으며 교수 심사위원은 학회의 협조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공모를 통해 위촉하였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사전에 e-mail을 통해 교육자료를 송부해 숙지토록 한 후 대회일 경기 시작 전에 심사위원별 임무부여, 대회진행방법, 리그전 심사규칙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대회장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3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심사 장면



그림 34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심사위원 교육 장면

다만, 심사위원들은 심사평가를 위한 논의시간과 심사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심사표에 5점 또는 7점 척도를 활용하는 방안, 예선과 본선의 심사대상 교체 방안, 논제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심사평가방식 요령 등을 사전에 미리 알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친근한 심사위원의 태도와 배려 등에 만족스러움을 나타낸 반면, 패자부활전의 도입, 평가표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등의 개선의견을 개진하였다.

7) 대회 진행 및 운영

심사위원·참가자·운영요원 교육자료를 담당자별로 각각 작성하고 대회 전에 미리 안내하는 등 대회 준비 및 참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가자에게는 수시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회 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러한 문자 안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대회 운영본부를 독립공간으로 두어 문서 보안을 강화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프린터를 임차·설비하여 대회장별 심사표·심사집계표 처리 등 대회 운영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였다. 특히, 대회 당일 참가등록 결과를 바탕으로 팀명이 기입된 통합 대진표를 신속히 작성하여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배부하고 전년과 달리 심사반의 심사 종료 후 심사표 정리 시간을 다소 늘린 결과, 첫날 예선 조별 리그전이 계획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대회형식은 등록한 122팀을 32개조(조별 3~4팀)로 나누어 풀-리그전을 통해 각각 1·2위 팀을 선발하여 64강을 가린 후 64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하였으며 준결승과 결승은 호암아트홀(JT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였다.

표 7-5.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진행방법

5. 11(토) - 예선리그		5. 12(일) - 본선토너먼트	
09:00~09:50	등록·교육 (심사위원, 운영요원)	09:30~10:30	64강(2경기)
10:00~10:20	대회 안내	11:00~11:30	32강
10:30~10:50	개회식	11:30~12:00	16강
11:10~12:00	예선(2경기)	13:00~13:30	8강
13:00~17:50	예선(10경기)	14:00~15:00	시상식·폐회식

조 편성은 참가신청 번호(1번~138번)순에 의해 32개조(조별 4팀)로 편성(1차), 편성결과 1개조에 같은 대학 소속의 팀원이 있는 경우 조정(2차) 순으로 편성하고, 본선 64강 경기에는 예선리그 조별 1·2위 팀 간 맞대결을 피하도록 대진표를 편성하였다.

한편, 원활한 대회장 배정과 이동, 대진 운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선 조별리그와 본선 대진표를 아우르는 통합 대진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대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모든 참가 대학생들이 조별 편성현황과 배정된 대회장, 그리고 본선 진출 현황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회장소인 제2연수관 로비에 대형 대진표(자석 부착형)를 제작·설치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이끌었다.

청운대학교 학생 32명을 운영요원으로 두어 타이머운영과 진행보조로 배치하고 대회당일 타이머 운영실습 등 교육을 실시하여 일정별 임무를 명확히 숙지시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였다.

대회장 중 가장 넓은 제1·13대회장을 신문·방송 취재용 대회장으로 꾸며 언론사의 취재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참관인석을 마련하여 내·외빈과 오산시 중·고등학생들의 단체 참관이 있어 이에 불편이 없도록 참관인석을 마련하였다.



그림 35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내·외빈 참관 장면



그림 36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오산시 중·고생 참관 장면

8) 개회식 및 시상식

개회식은 대회참가자, 심사위원, 운영요원, 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정희 위원장이 개회사,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이 격려사를 통해 대학생토론대회를 빛냈으며, 창설 10주년과 제10회 토론대회를 기념하

는 축하영상(한국외대 김정기 명예교수,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한림국제대학원 정관용 교수,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MBC 배현진 아나운서, 조선일보 엄보은 기자, Nowing 김도운 대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은철 상임위원)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과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기념하여 개회식장 외부에 10주년 주요 내용과 대회 개요를 포함한 “포토존”을 설치함으로써 내·외빈은 물론 참가 대학생·심사위원 등에게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각광받는 등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그림 37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오산시 중·고생 기념사진 촬영



그림 38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기념사진 촬영

시상식과 폐회식은 참가자, 심사위원, 내·외빈, 후원사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동상 4개 팀·장려상 8개 팀·후원사특별상 6개 팀·스피커상 8명에게 각각 시상하였고, 4강 진출팀에게는 준결승 진출권을 부여하였다.



그림 39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식 장면

표 7-6.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시상내역			수상팀 (자)
시상명	시상자명	시상내용	
대 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7백만원	뒷방늬은이들(한양대) 오장성, 최준호)
금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4백만원	라바(연세대) 김강원, 심여진
은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팀당 1백50만원	민심즉여심(충남대) 배여진, 송민진 수아레즈(서울대) 전인수, 최혜리
동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팀당 50만원	프로네시스(서울대) 손하늘, 배상윤 하랑제(경희대) 곽삼우, 박사라 공명(고려대) 곽용규, 최민식 동행(한양대) 오봉환, 이경진
장려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팀당 20만원	청산유수(경기대) 박정은, 김영은 다비쥬(서울대) 한재연, 손현명 진짜젊은이(성균관대) 강봉준, 김선희 믹스파워(건국대, 명지대) 박영선, 김민혜 사고와표현(고려대) 문정현, 권순민 정언(연세대) 안상우, 송희권 양강(고려대) 강채연, 양유정 적시적언(부경대) 정희정, 임종화
후원사 특별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상	상장, 상품	진지MODE(국민대) 김진태, 양지은 마지막(경기대) 장지수, 허계윤
	한국리서치시장상		역발산기개세(서울대) 김준태, 원종진
	KT estate 사장상		유종의미(서울대) 김현태, 최하은
	선거연수원장상		아·아(경북대) 김지현, 이교진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상		두근두근(이화여대) 이연주, 한세리
스피커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상장	입맞춤(경희대) 방호진, 김이지(경북대) 김이인정 토론당(서울대) 유수빈, 한명(한동대) 최한재 신의선물(한양대) 이재광, 양상블(한동대) 차윤경 코기토(고려대) 김준영, 조울(서울대) 배지연

9) TV 방송

대학생토론대회 (준)결승전은 TV방송 프로그램으로 기획·제작하여 호암아트홀(JTBC방송사)에서 개최한 후 녹화방송(9. 20. 08:00~08:45, JTBC 채널)하여 대학생토론대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임윤선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이호은 학회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성룡 상임위원이 참석하였다.

녹화 종료 후 진행된 시상식은 참가자, 심사위원,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상·금상 각 1개 팀·은상 2개 팀에게 각각 시상하였다.



그림 40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 대회 (준)결승전 장면



그림 41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 대회 결승전 장면



그림 42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 대회 우승팀 기념사진 촬영

특히, 방송 이후에는 국회방송(NATV)을 통해 재방송을 실시(10. 4. 16:00, 10. 5. 12:00)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를 통한 인터넷방송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영상(준결승 2게임과 JTBC 방송분 영상)을 게시하는 등 대회 참가자와 참가 희망 대학생들에게 교육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적극 제공하였다.

10) 기타

대회 종료 후에는 토론대회의 후방효과를 위해 대회 참가자와 심사위원 등에게 감사 인사를 문자로 발송하고, 각 수상 대학교에 수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일부 대학(한양대)에서는 자체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각종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한국대학신문, 대학저널, 이데일리, 아시아뉴스통신, 노컷뉴스, 베리타스알파, 아시아투데이)되는 등 대학생토론대회의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일부 참가자와 심사위원이 자신의 블로그 “정치언론홍보학과 엄태민”, “배네비’s 네버랜드”(네이버), “철없는 남자의 사는 이야기”(싸이월드), “경남대학교 토론동아리 한마 B.O.D”(티스토리)를 통해 참가에 대한 소회를 작성해 밝히기도 하여 자연스럽게 대회 홍보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추후 대회관련 블로그를 작성·게

시하는 자들을 선정,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대회 후방효과를 견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미래 유권자들의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대구·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올해로 4회째 지원하였다.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는 각 학교별 예선 후 7월 19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부양의무제 폐지여부와 관련된 시사성있는 논제로 32강과 16강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는 생애 최초 투표시 의무투표제 도입여부를 두고 토론하도록 하여 올바른 토론관을 갖도록 하였다.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는 7월 22일 예선전을 거쳐 7월 31일에 인하대학교에서 본선진출 8개 팀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의무투표제 도입여부, 선거권 연령 하향여부, 기여입학제 허용여부, 군복무 가산점 부활여부 중 각각 두 팀이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의 경우 대구사립중고등학교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공동주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표 7-7. 2014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현황

구분	일자·장소	대회방식	토론논제	비고
대구	2014. 7. 19(토), 경북대학교	32개교 32개팀 조별 리그전 후 토너먼트 /스피치대회	• 소득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 생애 최초 투표시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회
인천	2014. 7. 31(목), 인하대학교 ※ 예선 : 7.22.(화)	조별 토너먼트 방식	•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선거권 연령제한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 대학 진학에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 군복무 가산점은 부활하여야 한다.	4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토론대회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이 본선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참관하였으며,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함과 동시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최상황을 게시하는 등 대회 홍보와 언론사 취재를 지원하였다. 특히, 토론문화 발전에 기여한 교사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특별상을 시상하였으며, 위원장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올해로 제4회 대회를 맞이한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는 대구의 대표적 토론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학교 토론동아리에서 토론논제 선정 및 학교별 자체 토론대회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회주제와 연계하여 준비하기도 하였다.

학교별 예선전을 통한 출전팀 뿐만 아니라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접수로 기존 참여학교 외의 학교에서도 참여하여 폭넓은 참여층을 형성하였으며, 조별예선전 후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팀에 대해 별도의 스피치부문을 운영함으로써 대회 종료시까지 참가팀의 조기 귀가 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림 43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진행

특히, 지역 대표 단체들과의 공조(대구사립중고등학교연합회의 MOU체결을 통한 공동주관, 시상부문에 대구은행·CJ헬로비전·t-broad 방송상 마련)를 통한 실질적 후원과 각 기관 대표들의 시상식 참여를 통하여 대회 이미지를 격상시켰으며, 구·군위원회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대구토론교사지원단) 위촉에 의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과 더불어 전문 사회자·공연팀(대구경북늘푸른자원봉사단) 지원으로 품격있는 대회 진행모습으로 전국적 대회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경품 추첨 시 후원 단체 대표자 등의 추첨 및 기념 촬영을 통하여 후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경품으로 내세워 대회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였다.



그림 44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기념촬영

표 7-8.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구분		시상자	수상내역				비고
			학교명	팀명	수상자		
토론 부문	대 상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정화여고	삼국유사	김채은	문지연	
	최우수상	대구은행장상	함지고	혜성	김혜지	이성권	
	우수상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대곡고	미네르바	이지현	김수연	
			영신고	YSdT	노혜지	박현제	
	장려상	CJ헬로비전 대구방송상	경북여고	도토리	문지영	안은영	
			경화여고	무한토론	조민교	우지수	
		티브로드 대구방송상	원화여고	소수민족	유선주	현지원	
			덕원고	이의잇소	이유경	김지연	
	장려상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경원고	탐하라	김도훈	김홍규	
			화원고	워너비	김혜은	김수민	
			학남고	혜음	도희연	김희연	
			신명고	팡꾸이	이동희	유남균	
			청구고	노답	김동윤	서보국	
			구암고	Moo mo	강진모	이승무	
			영남고	응수타진	정현	최재관	
포산고			지저스	김지윤	이진화		
스피치 부문	최우수상	대구시립중고등학교연합 회장상	다사고	다사인성	김성준	김인영	
	우수상		심인고	17기통	이광희	류동환	
	장려상		서부고	간장치킨	권한결	박혜민	
			상인고	원터치	김정현	김기용	
			남산고	울버린	이정현	이지은	
			성화여고	토론하조	김채은	나서영	

2)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그림 45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장면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 대회는 대회 공고 전부터 과거 참가했던 학교나 학부 모듈로부터 대회 개최 여부와 일정 문의전화 등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내 연례행사로서 정착되었다. 다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토론 참가자 접수 및 방청 학생 모집시기가 학교 시험과 방학일정이 겹쳐 참가자수가 지난 토론회에 비해 감소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히, 이번 대회

에는 예선과 본선시 동일한 토론 논제를 활용함으로써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토론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예선대회는 2014. 7. 22.(화) 인하대학교 본관 소강당과 사회과학대(9호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인천 관내 고등학교 51개팀 학생과 지도교사 등 총153명이 참가하여, 조별토론과 심사로 본선진출 8개팀을 결정하였다.

본선대회는 2014. 7. 31.(목)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본선진출 8개팀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총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학생 서포터즈를 예선 및 본선대회 진행 요원으로 활용하여 참가자 등록, 예선대회 타이머 운용, 순서 추첨 지원 등 주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토론시간 중간에 방청학생의 질문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방청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46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기념촬영

식전에는 관현악팀의 연주를 통해 차분하게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행사 시작을 준비하였고 심사 결과 집계시간 동안에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비보잉 댄스 및 방송 댄스 공연으로 열띤 토론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자칫 딱딱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론회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경쾌하고 흥미있게 진행하였다.

표 7-9.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시상자	상 명	수상내역			비고
		팀 명	학교명	수상자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대 상	아르케(ARCHE)	신송고	김성우, 유지열	
	금 상	CARPEDIEM (카르페디엠)	서운고	김수현, 배은서	
	은 상	하 램	인천신현고	공지희, 이진선	
	동 상	디베이터스	삼산고	김수연, 김하영	
	장려상	재자가인(才子佳人)	미추홀외고	윤호정, 함다인	
		톨레랑스	부평고	신동민, 이인재	
		이데아	연수여고	권정민, 이희연	
		줄탁동시	인천청라고	김태연, 조인호	
인천언론인클럽회장상	스피치상	-	신송고	김성우	
인천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사회자상	-	강화고	한승현	
		-	인천외고	조수연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지도교사상	아르케(ARCHE)	신송고	손미현	
		CARPEDIEM (카르페디엠)	서운고	김용진	

〔3〕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소년의 스피치 와 토론능력 함양으로 올바른 토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2014. 8. 11.(월), 8. 14.(목) 총 2회에 걸쳐 MBC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이하 토론캠프)를 개최하였다.

토론캠프 참가자는 후보자TV토론 방송을 시청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을 방문하여 후보자TV토론 설문에 응답하거나 시청 소감문을 작성·제출한 후 토론캠프 이벤트에 응모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첨 후 100명을 선발하고 당첨자의 자녀, 친지, 지인 중에서 캠프참가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선정함으로써 후보자TV토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후보자 토론회 시청을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 문화 활성화와 접목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개최 장면

캠프참가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참가자의 일정에 따라 참가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율을 높였다. 특히, 참가자의 수준에 맞는 논제를 준비하여 학년별로 나누어 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원활한 토론실습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토론캠프 진행시 전문 방송인 출신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실습위주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고 각종 토론회시 실제 사용하는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참가자들이 토론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토론 진행 시 사회자도 학생들을 직접 담당하게 하여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실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7-10.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내용

일시	강좌명	교육내용	강사진
10:00~10:10	입 교	• 입교식 • 과정 안내	
10:10~10:20	인사말	• 인사말(축사)	상임위원(사무국장)
10:20~12:00	언어예절	• 바른언어, 말하기 예절 및 표준어법	김완태 아나운서
12:00~13:30		점심식사 및 토론준비	
13:30~14:30	스피치	• 발성과 발음 • 스피치의 기본 및 파워스피치 방법 훈련	MBC아카데미 강사 (A/B/C반)
14:40~16:00	TV토론 체험	• 스튜디오 TV토론 체험 ※ 스피치 및 상호토론 실습 등	MBC아카데미 강사 (A/B/C반)
16:10~17:20		• 모니터 : 촬영 리뷰 및 피드백	
17:40~18:00	수 료	• 수료식	

그리고 참가자 개인의 토론실습 장면을 촬영 후 DVD로 제작·배부함으로써 토론캠프 참가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토론캠프 개최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캠프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7%로 나타나 향후 참가대상 확대와 개최횟수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참가대상자들 대부분이 학생이었기에 방학에 맞추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여름 휴가 기간과 겹치게 되어 일부 학생들이 불참하였고(신청자 100명, 참가자 82명, 참석율 82%), 토론 캠프 시간과 횟수를 증가시켜달라는 문제는 차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실습 장면

〔4〕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단체 등의 토론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오산시와의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MOU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토론문화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기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지도 상승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4년 오산학생토론축제와 2014 오산학생토론대회를 각각 후원하였다.

오산학생토론축제는 2014. 11. 1.(토) 오산고등학교에서 오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 350여명이 참여한 행사로써, 오산시, 오산중학교, 오산토론연구회, 오산초·중등토론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토론체험과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수상자의 토론멘토링도 함께 실시하였다,

토론체험 부스는 오산시 관내 4개 고등학교에서 총 100여명의 고등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속에 성황리에 운영되었으며, 참여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사형제 폐지’에 관한 내용을 토론주제로 선정하여 대학생 토론멘토의 주관 아래 토론준비 방법과 자유토론 방식을 체험하게 하였다. 특히, 토론체험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참관한 학생들에게는 토론대회용 심사표를 배부하여 토론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평가하게 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리플렛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리플렛을 함께 배부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사진 등을 전시하였으며, 부스(교실) 내 앞면을 현수막으로 설치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49 찬성팀 멘토링 장면



그림 50 반대팀 멘토링 장면



그림 51 토론체험 실습 장면



그림 5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판넬 전시 장면

2014 오산학생토론대회는 2014. 12. 20.(토) 오산중·고등학교에서 오산시 관내 초·중·고 등학생 등이 참여한 대회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원장상(초·중·고 대상별 우수상, 우수연사상)을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해지는 각종 토론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한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와 대학교 토론동아리를 지원하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한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는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였는데, 토론대회 운영 노하우 제공은 물론 위원회 직원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인 ‘고란도란’에서는 위원회가 개발·활용 중인 토론대회용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자체 대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사용 승인하고 제공하였다.

Chapter VIII

부 록

- 1. 20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 2. 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3. 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 4.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 5.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 6. 역대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

부 록

〔1〕 20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2014. 1.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임정열 사무국장 부임
2014. 1. 20.	제1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2. 15.	선거방송TV토론 강좌 개최(수도권)
2014. 2. 17.	선거방송TV토론 강좌 개최(충청권)
2014. 2. 19.	선거방송TV토론 강좌 개최(호남권)
2014. 2. 24.	제2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2. 25.	선거방송TV토론 강좌 개최(영남권)
2014. 3.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발간
2014. 3.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주년 기념식 개최(한국프레스센터) 유권자 토론회 개최(한국프레스센터)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회의 개최(한국프레스센터)
2014. 3. 20.	제3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3. 25.	제4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3. 27.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KBS)
2014. 4.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장석인, 이어령, 신창운, 현경보)
2014. 4. 1.~2.	선거방송토론 실무과정 교육(제1차, 선거연수원)
2014. 4. 3.~4.	선거방송토론 실무과정 교육(제2차, 선거연수원)
2014. 4. 7.~8.	선거방송토론 실무과정 교육(제3차, 선거연수원)
2014. 4. 9.	제5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4. 9.~10.	선거방송토론 실무과정 교육(제4차, 선거연수원)
2014. 4. 10.	공영방송사(KBS·MBC) 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2014. 4. 17.	제6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4.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성한용 위원 위촉(새정치민주연합 추천)
2014. 4. 25.	제7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5. 2.	제8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5. 7.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MBC)
2014. 5. 8.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KBS)
2014. 5.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353회)
2014. 6. 13.	제9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6. 2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선거방송토론위 사무국장 평가회의 개최
2014. 6. 2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2014. 6. 27.	제10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2014. 7. 1.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2014. 7. 3.	제11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 7. 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KBS)
2014. 7. 17.~24.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 주간
2014. 7. 19.	제4회 대구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경북대학교)
2014. 7. 29.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중선관 규칙 제415호)
2014. 7. 31.	제4회 인천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인하대학교)
2014. 8. 11.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개최(제1차)
2014. 8. 14.	청소년 방송스피치 및 토론캠프 개최(제2차)
2014. 8. 28.~2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예선·본선, KT인재개발원)
2014. 9.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 제1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준결승·결승, JTBC호암아트홀)
2014. 9. 19.~2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비체펠리스)
2014. 9. 19.	제12차 위원회의 개최(비체펠리스 골드룸)
2014.10. 17.	제13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10.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양정숙 위원 위촉(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014.10. 30.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발간
2014.11. 1.	2014 오산학생토론축제 후원
2014.11. 3.	제14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11. 7.	제15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4.11.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허익범(방송통신심의위 추천)·박유성(학계 추천) 위원 위촉
2014.12. 20.	2014 오산학생토론대회 후원

〔2〕 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4. 3. 27(목) 10:00~12:00 (120분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30초	10:01:30	MC/ S/T	홍기섭 (KBS 보도 위원)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주제·진행방식 설명	30초	10:02:00		
4	사회자 공통질문	- 대주제1 :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김미희 → 박수현 → 강은희 → 정진후	8분 (6분 30초)	10:10:00	MC/ S/T	김미희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5	자유토론 I	☞ 사회자 Bridge -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10분 - 소주제1 :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 박수현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 소주제2 : 의료체계 개선방안 ▶ 강은희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47분 (40분)	10:57:00	MC/ S/T	
6	사회자 공통질문	- 대주제2 :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정진후 → 김미희 → 박수현 → 강은희	8분 (6분 30초)	11:05:00	MC/ S/T	
7	자유토론 II	☞ 사회자 Bridge -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10분 - 소주제1 : 역사교과서 문제 ▶ 김미희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 소주제2 : 사교육비 문제 ▶ 박수현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47분 (40분)	11:52:00	MC/ S/T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8	맺음말	토론자 맺음말(각 1분) ▶ 강은희 → 정진후 → 김미희 → 박수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7:00	MC/ S/T	정진후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1:58:00	S/T F.S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8:10	VCR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4. 5. 7.(수) 10:00~12:00 (120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패널 소개	1분	10:01:00	MC/ S/T	김 상 철 (MBC 논설위원)
3	기조연설	— 박원석/문병호/이만우/김선동(각 1분)	5분 (4분)	10:06:00		
4	진행방식	— 진행방식 설명	30초	10:06:30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 I	[주제 1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김선동/박원석/문병호/이만우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 30초)	10:12:00	MC/ S/T	〈토론자〉 A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6	토론자 자유토론 I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5분 ▶ 박원석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22분 (20분)	10:34:00	MC/ S/T	B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7	전문가패널 질문·답변 I	☞ 사회자 Bridge ▶ 패널 개별질문과 토론자 답변(총 22분) : 가급적 패널질문 30초, 토론자 답변 1분 정도	25분 (22분)	10:59:00		
8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 II	[주제 2 : 임금체계 개편 문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문병호/이만우/김선동/박원석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30 초)	11:04:30	MC/ S/T	C 문병호 (새정치민주 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9	토론자 자유토론 II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5분 ▶ 이만우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22분 (20분)	11:26:30	MC/ S/T	D 이만우 (새누리당 정책조정 위원)
10	전문가패널 질문·답변 II	☞ 사회자 Bridge ▶ 패널 개별질문과 토론자 답변(총 22분) : 가급적 패널질문 30초, 토론자 답변 1분 정도	25분 (22분)	11:51:30		
11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김선동/박원석/문병호/이만우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토론자의 발언시간이나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6:30	MC/ S/T	〈패널〉 1.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 한상완 (현대경제 연구원 총괄 연구본부장)
12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3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40	VCR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4. 5. 8(목) 22:50~24:50 (120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2:5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22:51:00	MC/ S/T	홍기섭 (KBS 보도위원)
3	주제·진행 방식설명	- 주제·진행방식 설명	30초	22:51:30		
4	기조연설	- 이정미/이상규/강은희/한정애 토론자(각 1분)	5분 (4분)	22:56:30		
5	국민이 묻는다! (국민질문후 토론자답변)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답변시간 7분 (가급적 1회 답변시 1분30초 정도) : 토론자 답변순서 정해놓지 않음. [주제1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MC 사회자 Bridge ▶ 국민질문자(1) 이순옥 → 토론자 답변 ▶ 국민질문자(2) 이하연 → 토론자 답변 ▶ 국민질문자(3) 이용석 → 토론자 답변 ▶ 국민질문자(4) 이재상 → 토론자 답변	34분 (31분)	23:30:30	MC/ S/T	A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B 이상규 (통합 진보당 정책위의장)
6	국민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I	[주제2 : 국정원개혁] MC 사회자 Bridge ▶ 국민질문자(5) 김동수 : 이상규→강은희→한정애→이정미 답변(각 1분30초)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6분 ▶ 강은희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자유토론)	8분 (7분) 27분 (24분)	23:38:30 24:05:30	MC/ S/T	C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7	국민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II	[주제3 :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MC 사회자 Bridge ▶ 국민질문자(6) 최영돈 : 한정애→이정미→이상규→강은희 답변(각 1분30초)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6분 ▶ 이정미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자유토론)	8분 (7분) 27분 (24분)	24:13:30 24:40:30	MC/ S/T	D 한정애 (새정치민주 연합 대변인) 수화 MIX
8	맺음말	MC 사회자 Bridge ▶ 이상규→강은희→한정애→이정미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토론자 발언시간이나 맺 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24:45:30	MC/ S/T	
9	클로징	MC 사회자 클로징	1분	24:46:3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4:46:40	VCR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4. 7. 7(월) 10:00~12:00 (120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김상철 (MBC 논설위원)
3	주제·진행 방식설명	- 주제 소개 [주제 :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진행방식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20분	1분	10:02:00	MC/ S/T	A 새정치 민주연합 박범계 B 정의당 김제남 C 통합진보당 이상규
4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 I	[소주제1 :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박범계→김제남→이상규→윤영석 답변(각 2분 이내)	10분 (8분 30초)	10:12:00		
5	자유토론 I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약 9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000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42분 (36분)	10:54:00		
6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 II	[소주제2 :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김제남→이상규→윤영석→박범계 답변(각 2분 이내)	10분 (8분 30초)	11:04:00		
7	자유토론 II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약 7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000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33분 (28분)	11:37:00		
8	청중과 소통의 시간	※ 사회자 Bridge ▶ 청중 발언(2~4명) : 소감, 당부, 궁금증 등 ▶ 000 토론자부터 답변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시간 조정 가능	12분 (10분)	11:49:00	수화 MIX	D 새누리당 윤영석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이상규→윤영석→박범계→김제남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4분)	11:55:00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6: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10	VCR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시 : 2014. 11. 12.(수) 10:00~12:00 (120분)

• 장소 : KBS TS-5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김진석 (KBS 기자)
3	주제·진행 방식설명	- 주제 소개 [대주제 : 정치개혁, 어떻게 이를 것인가?] - 진행방식 소개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23분	1분	10:02:00		
4	모두발언	[정치불신의 원인 진단] ※ 사회자 Bridge ▶ 원혜영→심상정→김문수→오병윤 발언(각 1분 이내)	6분 (4분)	10:08:00	MC/ S/T	A 새정치 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 실천위원장)
5	자유토론 I	[소주제1 : 국회개혁(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선진 화법 등)]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10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000 토론자부터 발언→(자유토론)	46분 (40분)	10:54:00		B 정의당 심상정 (정치특별 특별위원장)
6	자유토론 II	[소주제2 : 정당개혁(정당공천제 등)]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6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000 토론자부터 발언→(자유토론)	28분 (24분)	11:22:00		C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7	자유토론 III	[소주제3 : 선거개혁(선거구 획정 문제 등)]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6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000 토론자부터 발언→(자유토론)	28분 (24분)	11:50:00	수화 MIX	D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8	맺음말	[정치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 등] ※ 사회자 Bridge ▶ 심상정→김문수→오병윤→원혜영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4분)	11:56:00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10	VCR	

【3】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4.5.14., 법률 제12583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정 2010.1.25>
-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별표 3]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10.1.25>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2항·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정 당 법

[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50호]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14.7.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거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5.>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천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은 토론자간에 균형을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

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

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415호, 2014.7.29.>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정 2013.11.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

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 “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연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2005	2005.12.3.(수)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원내 수석부 대표 (4개당)	정치 민생	• 농가 소득의 안정화 • 고용 불안정과 구조 조정 • 공교육 부실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 • 집값 거품 형성과 분양원가 폭등에 따른 내 집 마련 곤란 • 빈부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 교육 재정, 교육시장 개방, 3불정책, 교원 평가 등 교육 문제 • 대북지원, 북한 인권 문제 • 도청내용의 처리와 향후 대책	염재호(고려대) ※ 질문자 신 울(명지대) 김민전(경희대)
2006	2006.7.19.(수)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4개당)	경제 교육	• 수해복구 대책 • 8·31정책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 당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신 울(명지대)
	2006.11.24.(금) 23:40~01:40 (MBC)	당대표 (5개당)	국정 현안	• 집값 안정화 대책 • 2007년 정부 예산안 쟁점 • 북핵문제 해법	박선영(가톨릭대)
2007	2007.5.30.(수) 10:00~12:00 (KBS)	원내대표 (6개당)	국정 현안	•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	김민전(경희대)
	2007.8.3.(금) 23:40~01:40 (MBC)	당대표 (5개당)	정치 외교 안보	• 북핵문제와 대북 정책방향 •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	신 울(명지대)
2008	2008.6.27.(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7개당)	경제	• 한미 쇄고기협상 문제 •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	엄길청(경기대)
	2008.11.28.(금) 10:00~12:00 (KBS)	대표자가 지정 (7개당)	경제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	엄길청(경기대)
2009	2009.4.15.(수) 10:00~12:00 (MBC)	대표자가 지정 (7개당)	경제	•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소주제1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소주제2 : 미래성장동력	유정애(방송인)
	2009.11.13.(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7개당)	정치	• 국책과제 – 소주제1 : 세종시 해법 – 소주제2 : 4대강 사업	유정애(방송인)

연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2010	2010.7.16.(수)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7개당)	경제 사회	•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 • 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노동일(경희대)
	2010.11.16.(화) 23:20~01:20 (MBC)	정책위 의장 등 (9개당)	경제	• 내년 예산안,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 서민경제와 중소기업활성화 –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	정혜정(방송인)
2011	2011.3.28.(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9개당)	국정 현안	• 민생현안, 각 당의 대책은? – 뛰는 물가, 어떻게 잡나? – 치솟는 전·월세, 대책은 없나?	오미영(경원대)
	2011.11.15.(화)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8개당)	국정 현안	•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청년실업 해소 방안은? – 비정규직 대책은?	엄길청(경기대)
2012	2012.6.26.(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정치, 교육, 사회	• 제19대 국회의 핵심 쟁점과 과제 – 원 구성, 왜 못하고 있나? – 제19대 국회 : 국민의 신뢰, 어떻게 얻을 것인가? – 민생현안 법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황상무(KBS)
	2012.7.18.(수) 10:00~12:00 (MBC)	정책위 부의장 등 (4개당)	경제 노동 복지	• 제19대 국회, 각 정당의 경제정책 방향 – 대기업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 어려운 경제, 어떻게 살릴까? –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까?	신동호(MBC)
2013	2013.6.18.(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경제	•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갑을관계 • 통상임금 • 경제활성화 방안 •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 • 지하경제 양성화	홍기섭(KBS) ※ 국민질문자 (4명)
	2013.11.25.(월)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경제 복지	•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소주제1 : 복지정책, 방향은? – 소주제2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증세 필요한가?	김상철(MBC) ※ 패널 김연명(중앙대)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2014	2014.7.7.(월) 10:00~12:00 (MBC)	원내대변인 등 (4개당)	국정 현안	•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소주제1 :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 소주제2 :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김상철(MBC)
	2014.11.12.(수) 10:00~12:00 (KBS)	혁신위원장 등 (4개당)	정치	•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소주제1 : 국회개혁 – 소주제2 : 정당개혁 – 소주제3 : 선거개혁	김진석(KBS)

[5]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06.5.31.)	1차	'06.3.25.(토) 10:00~12:00 (MBC)	정책위의장 (5개당)	경제노동 과학	•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 양극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 • 8.31 후속정책과 부동산 투기 방지 방안 •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홍종학 (경원대)
	2차	'06.4.15.(토) 10:00~12:00 (KBS)	원내대표 (5개당)	정치행정 외교안보	• 각 정당의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실천방안 •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 •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	김민전 (경희대)
	3차	'06.5.12.(금) 22:00~24:00 (MBC)	당대표 (5개당)	국정현안	• 5.31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 •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 • 국민 관심사 • 지방선거 후보공천제도	염재호 (고려대)
제17대 대통령선거 ('07.12.19.)	1차	'07.9.21.(금) 10:00~12:00 (KBS)	정책위의장 (5개당)	경제노동 선거	•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	신 율 (명지대)
	2차	'07.10.25.(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5개당)	교육복지 선거	•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	엄길청 (경기대)
	3차	'07.11.2.(금) 23:40~25:40 (KBS)	선 대 위원장 (5개당)	정치외교 선거	•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송재룡 (경희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08.4.9.)	1차	'08.1.31.(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4개당)	정치	•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 경제 기능 - 통일·안보 기능 - 교육등 기능	신 율 (명지대)
	2차	'08.2.29.(금) 10:00~12:00 (KBS)	정책위의장 (5개당)	경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 방향 - 대기업 정책 - 중소기업 정책	엄길청 (경기대)
	3차	'08.3.13.(목) 23:20~01:20 (MBC)	당대표 (5개당)	선거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 선거의 실현 -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 - 깨끗한 선거의 실현 방안	박선영 (동국대)

구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0.6.2.)	1차	'10.3.23.(화) 10:00~12:00 (MBC)	원내대표 (6개당)	교육행정	-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행정체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순애 (서울대)
	2차	'10.4.23.(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5개당)	경제	-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되고 있나? - 정부 재정, 문제없나?	엄길청 (경기대)
	3차	'10.5.6.(목) 23:10~01:00 (MBC)	당대표 (5개당)	정치선거	-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	유정아 (방송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4.11.)	1차	'12.1.30.(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7개당)	경제 복지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책 - 농어민과 소상공인 대책	유정아 (방송인)
	2차	'12.2.24.(금) 10:00~12:00 (MBC)	원내대표 등 (6개당)	국정 현안	- 각 당의 핵심 복지정책과 그 실현방안 - 각 당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 복지자원 확보 방안	정혜정 (방송인)
	3차	'12.3.5.(월) 10:00~12:00 (KBS)	당대표 등 (6개당)	정치 선거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 각 당의 총선공약 - 깨끗한 선거 실현 방안	신 울 (명지대)
제18대 대통령선거 ('12.12.19.)	1차	'12.9.24.(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민생 복지	- 서민 생활 안정 대책 - 영유아 복지 대책 - 청년 취업 대책 - 노인 복지 대책	김진수 (KBS)
	2차	'12.10.31.(수)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3개당)	경제 노 동 선거	- 재벌개혁 실천방안은? - 경기침체 해법은?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은?	신동호 (MBC)
	3차	'12.11.16.(금) 10:00~12:00 (KBS)	선거대책 위원회 대변인 (4개당)	정치 선 거	- 정치 쇄신 방안 -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실현 방안 - 대북정책 방향	황상무 (KBS)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4.6.4.)	1차	'14.3.27.(목) 10:00~12:00 (KBS)	원내 대변인 등 (4개당)	복지 교육	-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	홍기섭 (KBS)
	2차	'14.5.7.(수)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경제 노동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임금체계 개편 문제	김상철 (MBC)
	3차	'14.5.8.(목) 22:50~24:50 (KBS)	대변인 등 (4개당)	정치 선거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 국정원 개혁 -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홍기섭 (KBS)

〔6〕 역대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선거 구수	계	초청 대상		초청요건 미충족 대상		합동	
					대담 토론	연설	대담 토론	연설	토론	연설
합 계			－	2,021	1,163	21	58	440	147	192
대통령 선거	제17대		－	4	3	－	1	－	－	－
	제18대		－	4	3	－	1	－	－	－
국회 의원 선거	제17대	지역구	243	250	156	－	5	29	－	60
		비례대표	－	3	2	－	1	－	－	－
	제18대	지역구	245	383	142	－	1	140	49	51
		비례대표	－	3	2	－	1	－	－	－
	제19대	지역구	246	358	231	－	5	107	12	3
		비례대표	－	3	2	－	1	－	－	－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제4회	계	262	299	180	18	5	30	36	30
		시·도지사	16	20	18	－	2	－	－	－
		비례대표 시·도의원	16	17	17	－	－	－	－	－
		구·시·군의 장	230	262	145	18	3	30	36	30
	제5회	계	276	361	229	－	21	71	21	19
		시·도지사	16	21	13	－	5	－	3	－
		비례대표 시·도의원	16	29	17	－	12	－	－	－
		구·시·군의 장	228	292	183	－	1	71	18	19
		시·도 교육감	16	19	16	－	3	－	－	－
	제6회	계	277	353	213	3	16	63	29	29
		시·도지사	17	21	16	－	3	－	2	－
		비례대표 시·도의원	17	29	17	－	12	－	－	－
		구·시·군의 장	226	285	163	3	－	63	27	29
		시·도 교육감	17	18	17	－	－1	－	－	－

20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 보고서

2015년 2월 인쇄

2015년 2월 발행

발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쇄 : 렛츠디자인

